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2025. 11.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학교업무매뉴얼 - 학교안전에 탑재되어 있으며, 매뉴얼에 링크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식 등의 참고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경우에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링크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식 등은 참고용이므로 관련 부서의 공문, 지침, 계획 등을 확인 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 매뉴얼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계 법령, 지침, 계획 등의 변경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안전교육 ····· 1

1. 학교안전계획 ····· 2
2. 학생 안전교육 ····· 4
3. 교직원 등 안전교육 ····· 5
4.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7
5.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 9

제2편 교육활동 안전 ····· 11

1.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 12
2. 학교안전공제회 ····· 13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 16
4.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 19
5. 생존수영교육 ····· 21
6.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 24
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 26
8. 정보통신윤리교육 ····· 28

제3편 생활안전 ····· 29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30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 31
3. 학생자살사고 예방 ····· 32
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 33
5.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만들기 ····· 34
6. 수상 안전 ····· 35
7.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운영 ····· 37
8. 학교출입관리 ····· 39
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41

제4편 재난안전 ····· 43

1. 대설 · 한파 ····· 44
2. 폭염 ····· 47
3. 풍수해(태풍 · 집중호우 · 강풍) ····· 49
4. 지진(지진해일) ····· 52
5. 황사 ····· 54
6. 미세먼지 ····· 55
7. 오존 ····· 57
8. 화재 ····· 58
9. 유해화학물질 ····· 61
10. 식중독 발생 시 단계별 대처요령 ····· 62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69
12. 민방위 훈련 ····· 70
13. 교육시설공제 ····· 71

제5편 시설안전 ····· 73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건축 분야) ····· 74
2. 전기 분야 안전 ····· 76
3. 소방 분야 안전 ····· 80
4. 가스 분야(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 ····· 83
5. 승강기 분야 안전 ····· 85
6. 옹벽 안전점검 ····· 87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88
8. 안전점검의 날 ····· 90

제 1 편 안전교육

업 무 명	안전교육
관련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업무개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계획 수립, 학생과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학교안전계획
	2. 학생 안전교육
	3. 교직원 등 안전교육
	4.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5.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포털(생애주기 안전교육자료 탑재) ○ **교육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 - 학교안전 - 안전교육자료)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 - 학교안전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1. 학교안전계획

교내·외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 매년 수립·시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요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8조
병설유치원, 분교, 방송통신중·고는 초등학교, 본교와 분리하여 수립 단, 초등학교, 본교의 학교안전계획에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방송통신중·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병합 수립 가능하며, 각각 수립한 것으로 인정	주요내용	① 교내·외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 매년 수립·시행 ② 학교안전계획 수립 대상 ▸유치원(사립, 병설유치원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 분교 ▸각종학교, 공민·고등공민·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③ 신설교(9월 개교 등 중간 개교 학교 포함)도 즉시 수립·시행
계획 수립 팀(TF) 구성	주요내용	① 학교안전계획 수립 T/F 팀 구성 ▸구성 -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안전부장, 교육과정 및 보건담당 교사 등 - (외부) 학부모, 학생대표, 민간 전문가 등 * 학교 부장단으로 구성 가능(부장 회의 시 수시 협의) * 학기말 부장단 연수 등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 협의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 발휘		
『학교안전계획』 수립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5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안전계획 포함 사항 ▸교육부 기본계획, 도교육청 예방 지역계획 반영 ▸**(학교)안전 점검의 날 탄력적 운영** ▸학교현황 현행화: 비상연락망, 수업일람표 등 ▸예방활동 계획: 안전교육 계획, 학교 출입절차, 비상구 관리, 학교안전문화 증진, 교내 교통안전 대책 등 ▸대비활동 계획: 재난대응 훈련 계획, 비상용품, 각종 도면 관리 계획 등 ▸비상 시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각종 매뉴얼 관리 ▸복구 활동 계획: 상담치료, 시설복구, 피해보상 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계획』 시행 및 평가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주요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매년 2월 말까지 ② 교직원 대상 연수: 3월 중 ▸모든 교직원 대상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연수 실시 (학교에서 자체 계획 수립, 참석자 등록부 보관) ③ 학교 홈페이지 게시 ▸누구나 로그인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게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은 비공개) ④ 학교안전계획서 제출: 매년 3월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⑤ 자체평가: 3월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학교안전계획 자체평가 실시 **※ 2025학년도부터 ④,⑤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으로 입력·제출**

2. 학생 안전교육

학교(유치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 시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생안전교육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주요내용	① 교육과정 연계 학생 7대 안전교육 실시 -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및 교육활동 전 · 후 안전교육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생안전교육 시수 (51차시)와 횟수를 반영 ※ 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 안전, 응급처치
실적보고	주요내용	① 시기: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 ② 서식: <학생안전교육 실적 보고 서식>에 따름

3. 교직원 등 안전교육

학교(유치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직원 영양교사는 교원, 영양사(교육공무직원)는 계약제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초등 돌봄 관련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구분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주요내용	① 교직원: 교직원은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으로 구분 ②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을 제외한 교직원 ③ 계약제교직원: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 중 학교와 계약을 근거로 근무하는 교직원** ④ 교육활동참여자: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봉사활동(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하는 자(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 등)**
교원, 직원의 안전교육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성희롱 등 예방교육, 합동소방훈련의 경우에도 내부결재(등록부 서명)를 통해 인정 가능	주요내용	① 내용: 학교,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원, 직원은 매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7대 안전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포함 ② 연수인정범위: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집합/원격연수, 전문강사를 활용한 소속기관 자체 연수 ③ 증빙방법: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등록부 서명)
계약제교직원의 안전교육 **【방과후강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연수 가능한 교육자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안전교육자료	주요내용	① 내용 ▸3년 이상 계약 체결 종사자 : 「교원, 직원의 안전교육」 내용과 동일 (예: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 ▸3년 미만 계약 체결 종사자 :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총 1년에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7개 안전영역 중 1개 이상 이수)(예: 기간제교사, 시간제 교직원 등) ※ 기간제교사 A가 한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3년 미만 계약 체결 종사자에 해당됨 ② 연수인정범위 및 증빙방법은 「교원, 직원의 안전교육 내용」과 동일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활동참여자 **【교육활동참여자 학교 자체 교육자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안전교육자료	주요내용	① 내용: 연간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교육시간 규정은 없음, 학교 자체 결정), 학교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실시 ② 증빙방법: 내부결재(등록부)
실적보고	주요내용	① 시기: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 ② 서식: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적 보고 서식>에 따름

4.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학교(유치원)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계획(대상·내용·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수립하고 매년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주요내용	① 내용: 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② 대상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지방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교육공무직원 ▸스포츠강사 또는 운동부지도사 등 학생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교직원 ③ 계획 수립: 매학년 3월 31일까지 수립 (기준 당해 연도 3월 ~ 다음연도 2월) ④ 교육시간: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⑤ 강사요건 ▸의사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자격 소지자) ▸응급구조사(응급의료, 구조, 구급, 교육 강사 등에서 5년 이상 종사자) ⑥ 면제대상: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 ⑦ 이수처리: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등록부 서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응급처치교육 등(외부)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3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
	주요내용	① 내용: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대학교,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 지원 가능 예) oo병원 응급처치교육, 재난안전본부 응급처치교육, oo소방서 응급처치교육, oo연수원 응급처치교육 등에서 교육을 이수(이 경우에도 학교보건법상 강사요건과 교육 시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필요)) ② 이수처리: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등록부 서명)
실적보고	주요내용	① 시기: 해당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출 ② 제출내용 ▸교육대상 인원수(교원, 직원) ▸교육실시 인원수(교원, 직원) ▸교육실시율 = 교육실시 인원수/교육대상 인원수

5.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학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1~2학년(병설유 포함) 대상으로 안전 체험 교육 가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차차’ 란?	① 운영 대상: **초등학교 1~2학년(병설유 포함)** ② 참여 가능 인원: 1일 80~150명 ③ 교육시간: **09:10~11:50(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④ 교육프로그램

표준안 영역	차량 교육 프로그램
생활안전	· 생활 안전 체험
교통안전	· 지하철 안전체험 · 안전밸트 체험 · 횡단보도 체험
재난안전	· 지진 체험 · 화재대피 체험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신청서 제출 및 확정 통보	관련근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학교안전교육 7대 교육 표준안
신청 학교가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진입 가능여부, 차량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후 확정 통보	주요내용	① 신청서 제출 ▸시기: 매년 1월(상반기 선정), 7월(하반기 선정) ▸연간 교육 일정표를 확인 후 체험 교육 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육 희망 일을 월별로 기입 ▸인원(학년): **80~150명(초1·2학년, 병설유)** ▸차량 진입가능 여부를 학교에서 자체 판단하여 신청 (45인승 버스 기준, 가로 15m x 세로 6m 이상의 공터 또는 운동장 확보 여부 확인) ② 확정 통보: 상반기(2월 말까지), **하반기(8월 초까지)** ③ **기타사항: 선정된 학교는 사전에 학생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교육 실시 관련 자체계획 수립 필요** ※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기 위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체험 교육 실시	주요내용

① 시기: **매년 3~11월**

② 교육 시간표(안)

기본 교육시간 (25명 * 6개반 = 150명 기준)		
차수	시 간	학년(예)
1	09:10 ~ 09:35(25분)	초 1
2	09:35 ~ 10:00(25분)	초 1
3	10:00 ~ 10:25(25분)	초 1
준비	10:25 ~ 10:35(10분)	
4	10:35 ~ 11:00(25분)	초 2
5	11:00 ~ 11:25(25분)	초 2
6	11:25 ~ 11:50(25분)	초 2

※ 본 시간표는 예시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소규모학교(전교생 60~80명)는 학교 희망에 따라 전교생 또는 원하는 학년에 한해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③ 교육진행

▸순서

입구 ⇒ 안전밸트 체험 ⇒ 지하철 안전체험 ⇒ 지진 체험 ⇒ 생활 안전체험 ⇒ 화재대피 체험 ⇒ 출구 ⇒ (차량외부)횡단보도 체험

▸교육 입장은 4명 1개조로 하여 순환식으로 진행 (대기 학생은 차량 후면 시청각 영상 시청)

▸교육시간은 1개반(25명 기준) 25~30분 소요

④ 안전한 체험을 위한 학생 지도 사항

▸목걸이형 핸드폰, 스마트폰, 휴대용 손가방 지참 금지

▸운동화 착용(슬리퍼 금지)

▸여학생의 경우 치마보다 바지 착용 권장

▸특수학급 학생의 경우 필히 인솔 교사와 함께 참여

⑤ '차차' 도착 전 준비사항

▸**차량이 08:00 전후로 도착하므로 사전에 학교 진입로 확보 요망**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 장소는 그늘 진 곳으로 선정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교문 현수막, 대형화분 바리케이드 등 방해물 제거

▸정문 출입이 불가하여 차량 우회도로가 있을 시 사전 협의

⑥ 학생 평가 - 학생안전체험 평가지 참조

▸체험교육 종료 후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평가 실시

▸복습용 영상 활용 (https://www.youtube.com/watch?v=WLJtiYMjXxQ)

제 2 편 교육활동 안전

업 무 명	교육활동 안전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업무개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고 및 보상 처리절차와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2. 학교안전공제회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4.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5. 생존수영교육
	6.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7.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실험 · 실습실 안전 관리
	8. 정보통신윤리교육
참고자료	○ 교육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체험학습 안전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초등용, 중학교용, 고등학교 핸드북)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 과학실험실 안전 -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초등, 중등)(경기도교육청, 2014.12.) -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초등, 중등)(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 정보통신윤리교육: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1.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안전사고 등 학생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으로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 추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통한 학생안전 확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119 신고(필요 시 112 신고) ▸긴급 구조·구호 실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 동시 보고 ② 보고대상 **<교육부(moe119@korea.kr) 동시 보고 대상>**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보고 대상>** ▸교육부 동시 보고 대상 이외의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 ▸학생사망, 다수 피해발생, 언론 보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③ 보고절차 ▸사고 발생(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에 유선 보고(학교) ※ 상기 보고 대상 중 교육부 동시 보고 대상의 경우는 교육부(moe119@korea.kr)로 동시 제출 ▸사고경위, 피해현황, 관련자 현황, 조치사항 등 사고관련 사항을 사안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에 공문보고(긴급한 경우 FAX 또는 메신저 우선 보고 후 공문발송) ▸학교 사안보고 후 지원 사항 및 후속조치 사안담당부서에 보고(교육지원청) ▸최초 보고 이후 관련 상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 보고 실시

"사고대응 일이삼" 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 시 학생, 교직원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참고자료】

- 학생안전종합계획 사안보고 서식

【보고 시 주의사항】

- **재난·안전사고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
 단, '교직원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
 < "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처리 요령>
- 최초 1회 사안보고서 제출(의무)
 ※ 피해자 이름, 성별, 담당업무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기재 생략
- 본인이 추가 보고를 반대하는 경우 추가 보고 생략
- 최초 보고 시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 을 명시

2. 학교안전공제회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보상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공제 가입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주요내용	① 가입대상(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 가입) ▸유치원, 초 · 중 · 고 ·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인가) 대안학교 ② 공제료 납부 ▸매년 4월 1일 공제료 통보 → 4월 30까지 공제회에 공제료 납부
보상 범위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주요내용	① 보상 범위: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② 보상 대상 ▸학생: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 ▸교직원: 학생의 교육 또는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③ 보상대상 교육활동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교과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활동 ▸**등·하교, 현장실습, 기숙사생활 중의 활동 등** ④ 보상대상 질병 ▸학교급식 · 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질병),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⑤ 공제급여 지급 제한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 아닌 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고 ▸지병 또는 신체적인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타 법률에 의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공제급여의 종류 **"비급여항목" 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다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세부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항목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에서 지급 가능한 비급여 항목 확인 가능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주요내용	**※ 아래 항목은 공제회 심사를 통해 지원(전액 지원 아님)** **① 요양급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치료비) 소요된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 ②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지급 ③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④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⑤ **장 례 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⑥ 위 로 금: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청구 **【구비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 4. 진단서(50만원 초과 시) 5. 주민등록등본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청구 및 지급)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주요내용	①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학교) 또는 공제회에 제출 ② 치료 후 보상금 청구 ▸**사고발생 후 3년간 미청구 시 청구 불가(소멸시효 완성)**
심사청구 및 재심 청구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주요내용	① 심사청구(경기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② 재심청구(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 가능

절차	방법	비고
사고통지 (의무)	학교안전사고보상 지원시스템	학교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제출		학교 또는 학부모
구비서류 제출	우편 또는 온라인 (학교안전사고보상 지원시스템)	학교 또는 학부모
심사 및 결정		14일 (14일 연장 가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구비서류】**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서 2. 학교장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심리검사결과 보고서, 상담기록지 4. 주민등록등본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주요내용	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학교폭력 대상 X) ②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1년 연장 가능) ③ 청구절차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학교안전과 제출(업무관리시스템) ▸대상자 지정 결정 ▸통보(학교 및 신청인) ▸공제회에 치료비 신청(우편) ④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지정 명단
학교배상책임공제	주요내용	① 경기도교육청 일괄 가입(학교 별도 가입 불요) ② **보상범위**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 · 물적 피해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교육활동 중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 · 파손 피해 ※ “휴대품”의 범위: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③ 사고발생통지 및 보상 신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sws/) ▸사고발생통지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휴대품 분실) 분실사고발생신고서 및 보상신청서 제출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대책 등의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23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소규모 형태의 체험학습 운영 원칙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통 준수 사항 확인 ▸필수 포함 요소: 학생안전대책, 사전안전교육,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계약방법을 위한 교육행정실과 협의
【참고자료】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자료 - 국외 현장체험학습 공통 준수 사항		
활성화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① 기본계획 심의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방법 등 ② 동의율 설정 ③ 1차 가정통신문 발송 ▸자체동의 비율 반드시 안내 ▸특히, 동의율 확보 미달 시 체험학습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④ 현장체험학습 실시 및 변경 여부 결정 ⑤ 현장답사(필요 시)
- 동의율은 학교 전체, 학년 전체 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에만 해당 - 불참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 수립 필요 -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동의율 90% 이상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심의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방법 등
계약 시행	주요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준수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참조: 「학교행정 업무매뉴얼」 학교회계지출(현장체험학습)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현장답사 및 안전교육	주요내용	① 시행 직전 현장답사(의무사항) ▸업무 담당자, 학부모위원 필수 참여(학생 참여 권장)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 숙박형 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활성화위원회 보고 ② 사전업무 처리 ▸ 세부추진 계획 수립, 자체점검표 작성 ③ 2차 가정통신문 발송 ④ 미참가 학생 교육계획 수립 ⑤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⑥ 요보호 학생 파악 ⑦ 비상약품 준비 ⑧ 인솔자 및 안전요원 확보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 확보 권장.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이 인솔 가능** ▸**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며, 5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 배치(학급당 1명 배치 권장)** ▸**외부안전요원 배치 희망 시 "경기교육모아-사전정보방" (more.goe.go.kr/exp8) 입력**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⑨ 대규모 운영 시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 제출·컨설팅 ⑩ 사전 인솔자 안전연수 ▸(내용)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안전장구의 사용법 등 ⑪ 사전 학생 안전교육 실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포함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안전가이드 등 참고·활용 ⑫ 사전/사후 체험학습 운영 사항 입력 (※ **숙박형만 해당**)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사전/사후정보방** (more.goe.go.kr/exp8)

【대규모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안전요원 상시 배치】

- 4학급 이상, 100명 이상 대규모로 시행할 경우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
- 외부안전요원 또는 안전요원 연수 이수교원 활용
-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안전요원 인력풀**(more.goe.go.kr/exp8)
- 크레존(www.crezone.net), 워크넷(www.work.go.kr) 등 활용

현장체험학습 과정의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가급적 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

※ 안전 전문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담당, 대한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안전요원 연수 이수교원 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운영 및 자체 평가	주요내용

【참고자료】
-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점검표
- 현장체험학습 활동별 안전점검표
- 상황별 안전점검(교통, 음식, 숙소, 화재 예방)
- 활동별 안전점검(수상, 갯벌,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 활동)
- 응급 조치(차량 내, 항공 및 선박, 식사 및 숙소, 지진 발생 시,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 처치)
- 국외 체험학습 안전점검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① 단체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점검
-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계약시 포함**
 - ※ 체험지에서는 자체 음주감지기 활용
 - ※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
 - ※ 계약 특수 조건으로 출발당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시

②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학생 안전교육 실시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철저

③ 상시 인원 파악
- ▸학생 건강상태 확인

④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SMS(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 ▸사안(고) 인지 즉시 보고
 -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유선 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⑤ 불참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계획·운영

⑥ 정산
-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 내역 공개,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 조치

⑦ 자체평가
-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활용

⑧ 운영결과 공개(종료 후 20일 이내, 숙박형만 해당)
- ▸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사전/사후정보방 (more.goe.go.kr/exp8)

4.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대책 등의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23조, 유아교육법 제13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참고자료】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자료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소규모 형태의 체험학습 운영 원칙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공동 준수 사항 확인 ▸필수 포함 요소: 학생안전대책, 사전안전교육,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교육행정실과 계약방법 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주요내용	◦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심의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방법 등
계약 시행	주요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준수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장 답사 및 안전교육	주요내용	**① 현장답사** **▸시행직전 1회 현장답사 실시(학교장이 안전대책 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답사 생략 가능. 단, 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실제 업무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 1일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 ② 사전업무 처리 ▸자체 점검표 포함 세부실천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요보호 학생 파악
【현장답사 생략 가능한 경우】 - 학교장의 책임 하에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등이 확보되어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2명 이상이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모둠 편성 권장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예절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담임교사는 귀가 전 집합 '귀가안전교육'을 실시 - 안전한 귀가 확인을 위해 문자 전송 등 확인 방법 권장 - 대중교통을 개별로 이용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적극 권장 - 가급적 출퇴근시간 등의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이동하도록 계획	주요내용 ③ 인솔자 확보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 확보 권장.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 이상이 인솔 가능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며, 5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 배치(학급당 1명 배치 권장) ▸외부안전요원 배치 희망 시 "경기교육모아-사전정보방"(more.goe.go.kr/exp8) 입력 ④ 사전 인솔자 안전연수 ▸(내용)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안전장구의 사용법 등 ⑤ 사전 학생 안전교육 실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포함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안전가이드 등 참고·활용
운영 및 자체 평가	주요내용 ① 단체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점검 ▸학교 자체적으로 운전자 음주감지 ※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 ※ 계약 특수 조건으로 출발당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시 ②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학생 안전교육 실시 ▸체험처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③ 상시 인원 파악 ▸학생 건강상태 확인 ④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SMS(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사안(고) 인지 즉시 보고 -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유선 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⑤ 불참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계획·운영 ⑥ 정산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내역 공개,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 조치 ⑦ 자체평가 ▸자체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활용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참고자료】 -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점검표 - 현장체험학습 활동별 안전점검표 - 상황별 안전점검(교통, 음식) - 활동별 안전점검(수상, 갯벌, 산행, 캠핑(야영), 전사·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 활동) - 응급 조치(차량 내, 항공 및 선박, 음식 및 사고, 지진 발생 시,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 처치)	

5. 생존수영교육

생존수영교육 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수영교육의 목표 달성
※ 아래의 절차는 교육부·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사업(5:5)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생존수영교육에 한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수영교육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존수영교육 조례(2023.12.22.)**
※ 예산 확보 시 초3·4학년 기준시간 이상 실기교육시간 확대 가능하며, 기타 학년으로의 확대 권장함	주요내용	① 대상: **초 3,4학년 필수 (기타학년 선택)** **② 교육시간: 3학년 10차시, 4학년 6~10차시 실기교육 편성 (1차시 40분 기준)** ③ 수영장 평가제를 통해 선정된 수영장에서만 수영교육 가능 ※ 수영장 평가제 - 주관: 교육지원청 - **수영장 평가 항목: 수영강습료 상한제 준수, 생존수영 표준교육과정 운영 여부, 수질 검사 결과 등**
수영교육 계획 수립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융합교육정책과)
【참고자료】 - 수영실기교육 길라잡이(교육부) -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I (교육청) -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II(교육청)	주요내용	① 수영교육 체험학습 안전 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공동 준수 사항 확인 ▸필수 포함 요소 -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안전대책 방안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반영 방안 - '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검표'에 의한 점검 계획 -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② 수영강습비 상한제 확인 ▸**수영강습비 상한제 적용: 1개반 1차시(40분) 지도 시 60,000원 (2024년, 2025년)**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상한제 범위 내 강습비 조정 가능** ▸수영강습비가 '수영강습비 상한가'보다 적을 경우 학생수 기준으로 지급 가능 ③ **수영교육 계획 수립 시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적용** ▸**10차시 분량의 교육과정(수준별 재구성 가능)** ④ 계약을 위한 교육행정실과 협의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내장 발송	주요내용	① 1차 가정통신문 발송 ▸주제 및 장소 일정 등 수영교육 정보 안내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 (필요시)	주요내용	①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교육행정실) ② 제안서 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주요학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의 가능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주요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자문) ▸기본계획(일시, 장소, 내용, 수익자 경비 등) 심의(자문)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자문) (사전 답사 여부, 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결정 등) **※단독 아닌 주요학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의 가능**
사전 답사	주요내용	① 사전 답사 1회 이상 실시 ② 사전 답사 시 중점 점검 사항 ▸ ‘수영교육 체험학습 답사 안전 점검 항목표’ 및 ‘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검표’에 의한 점검 ▸도보 및 버스 이동 경로 확인 ▸자동제세동기, 소화기 및 소화전 보유유무·위치 확인 ▸수영장 내 학생안전 위험요소 확인 ▸안전 대피로 확인 ▸수영장 내 수영교육용품(구명조끼 등) 구비여부 확인 등 **③ 학교장 결재**
계약	주요내용	① 계약체결<참고자료: 계약서 외 각종서식>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제출 요청 및 종합결과 확인 ② 인솔자, 참여 학생 여행자 공제 보험 계약
2차 안내장 발송 ※1차 안내장과 통합 가능	주요내용	① 2차 가정통신문 발송 ▸최종 참가 여부 확인 **※1차 안내장과 통합 가능**
세부계획서 교육지원청 제출 및 환류(대규모 운영 시)	주요내용	① 대규모 운영 시 기본계획서 및 자체점검표 교육지원청 제출(답사 결과 포함) ② 대규모 체험학습은 교육지원청 수영교육 평가팀의 컨설팅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주요내용	① 교사와 인솔자 사전 안전연수 실시 ▸(내용)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 ② 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전 안전교육 실시 ▸차량 이용,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예방교육 ▸대피경로 및 행동요령 교육
수영교육 실시 【수영교육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인사사고의 경우(인원수 불문, 경미한 사례 포함 즉시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주요내용	① 차량 이용 당일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차량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출발 전 수송버스 운전자 자체 음주 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 확인 ② 비상연락체계 유지 ▸체험학습 참여 학생·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③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사안 발생 즉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후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SMS 등을 활용하여 연락 ④ 비상대피훈련 의무 실시 ▸수영교육 1일차 수영장 도착 후 바로 실시 ▸실시 횟수: 1회 이상 ▸실시 내용: 화재 및 지진시 행동요령, 비상대피로 확인 및 실제 이동하기, 대피장소 확인 및 인원 점검 ▸이동경로: 수영장 풀→비상대피로→대피장소 ⑤ 수영 전 준비운동 실시 및 학생 건강상태 파악 ⑥ 수영장 이용 수칙 반드시 교육 실시 ⑦ 담임(담당)교사 수영교육 실시 전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확인(의무사항) **▸대규모(4학급 이상 또는 100명 이상) 시행 시 수상안전요원 2명 배치 가능** - 수영장 소속 수상안전요원으로 대체 가능 - 외부안전요원 또는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활용 ⑧ 담임(담당)교사 임장지도(원칙) ▸협의 시 수영강사가 일시적 담당 가능하나 시간적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수영장 내 공간이 협소하거나 학생 옆 임장이 어려운 경우 유연하게 판단하여 지도**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①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실시 (도교육청 일괄)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주요내용	① 수영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② 수영교육 정산서 제출

6.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과학실험 안전망 확보를 통한 과학탐구실험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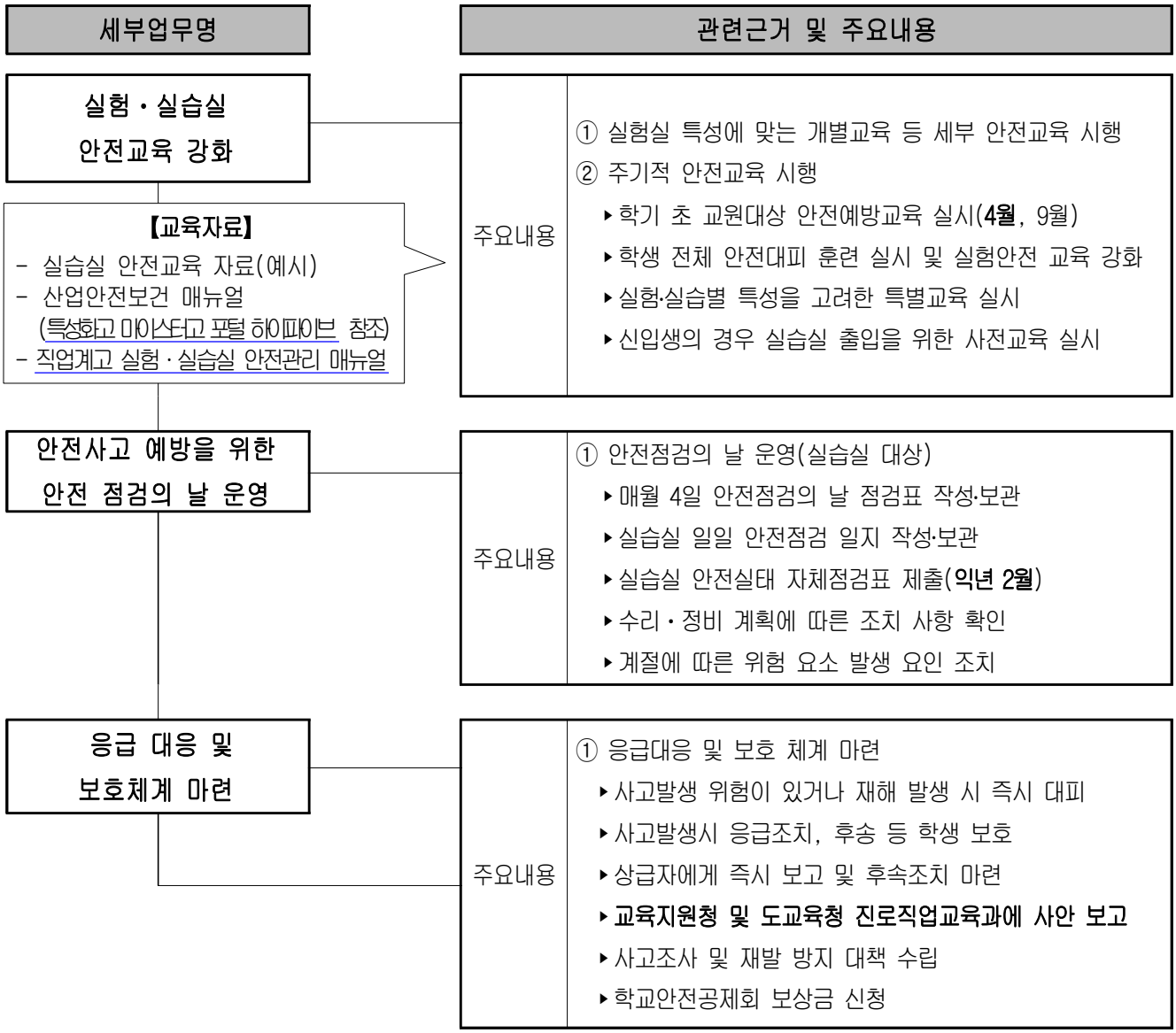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근거	◦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 운영 계획서, 과학교육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포함사항) 실험실 안전 관리 담당자, 과학실험실별 담당자 지정, 화학약품 안전 관리 계획, 비상연락체제, 실험안전 연수 계획, 안전설비확충 계획,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체제 강화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과학실험실별 담당자 지정) ② 과학 전담교사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배치 ③ 과학실험실 주기적 안전 점검 실시 ▸단위학교 자체 안전점검(월1회), 결과 제출(연2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비는 주1회 자체점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현장 안전 점검(연2회) ④ 비상연락체계 구축 ▸긴급연락체제 구축 및 게시
과학실험실 안전한 환경 조성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 항목)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 안전 장구 및 설비 확충 ▸과학실험 안전 설비 및 확충 ▸실험 기자재 및 시약, 폐수, 폐시약 분리 보관 철저 ② 안전 장구 구비 및 착용 지도 ▸과학실험 안전 장구 착용의 생활화로 안전사고 예방 ③ 실험안전 관련 게시물 비치 및 준수 ▸실험안전수칙 게시 및 준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활용 - 화학물질 제조사의 자료 구입 시 확보, 비치 ▸과학실험안전, 화학약품 안전 매뉴얼 비치 및 준수 ▸비상연락망 비상 대피로 게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생 과학실험 안전 교육 강화 【교육자료】 - 지능형 과학실 ON(학습자료실-실험안전)	관련근거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 시작 전 “5분 안전 교육” 생활화 ▸당일 실험과 관련된 실험안전 교육 실시 후 본 실험 진행 ②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과학실험 안전교육 실시 ▸교육과정 내 과학실험안전 관련 별도의 시간 편성 및 운영 ③ 과학실험실 수업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신나는 과학수업 ④ 안전한 과학수업을 위한 대체자료 활용 및 훈련 실시
교직원 과학실험 안전 교육 강화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주요내용	① 단위학교 과학실험 안전관련 자체 연수 실시 ▸교직원(방과후교사포함) 과학실험안전 연수 실시 (연1회 이상) ② 교육지원청별 과학실험실 안전 연수 강화 ▸과학실험실 담당 교원 및 행정실무사 대상 (15시간 이상) ③ 연수내용 ▸안전한 과학실 조성, 화학약품 관리(MSDS), 사고 대응 방법, 과학실험 역량 강화 등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강화	관련근거	◦ 과학실험실 안전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응급조치 ▸환자 상태 관찰 및 응급 처치 (의료기관 이송여부 결정, 필요시 119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보호자 연락, 관리자 보고 ②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 ▸사고 원인 및 피해 상황 파악, 상황 기록 ▸각급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③ 후속 조치 ▸사고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재발방지대책 마련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한 보상 강화

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실험·실습실(이하 실습실)의 안전한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통한 인적·물적 피해 방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실습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주요내용	①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부착 ▸ '학교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 수립 ▸ 실습실 안전관리 점검표는 실습실 용도·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결재 보관 ▸ 학과별, 실험·실습실별 업무담당 및 책임자 지정
실습실 안전 관리	주요내용	① 실습실별 비상연락망 작성·부착 ▸ 실습실 책임자의 성명·연락처 ▸ 화재 및 인명 피해 시 구호를 요청할 긴급 연락처 ▸ 생화학 물질 유출 시 연락처 ▸ 실습실의 각종 설비(전기, 설비, 가스 등) 사고 시 연락처 ② 실습실 안전관리 사전 조치 ▸ 학교 내 실험·실습실을 자체 점검반 구성·운영 ▸ 위험 시설 또는 위험 실험 내용에 대한 경고문 부착 ▸ 안전 대피 매뉴얼 비치 및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운영일지 작성, 각종 시료 보관 대장, 마스터키 비치 ③ 기자재 운용 관련 안전 확보 ▸ 기자재 운용 설명서와 작동 방법, 조작 원리 부착 ▸ 기자재 작동 시 필요한 보호 장비 착용 안내문 부착 ▸ 기자재 작동에 따른 위험 내용 경고문 부착 ▸ 중장비 운행시 안전수칙(대책)확보 ④ 물질 안전보건 자료(MSDS)의 작성·비치 ⑤ 경고표지의 부착 ⑥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⑦ 응급 대응 및 보호체계 마련 ▸ 소방서 긴급 출동 및 보건진료소 응급진료 협력체계 구축 ▸ 실습실 내 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강화
【교육자료】
- 실습실 안전교육 자료(예시)
-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참조)
-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
주요내용
① 실험실 특성에 맞는 개별교육 등 세부 안전교육 시행
② 주기적 안전교육 시행
▸학기 초 교원대상 안전예방교육 실시(4월, 9월)
▸학생 전체 안전대피 훈련 실시 및 실험안전 교육 강화
▸실험·실습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교육 실시
▸신입생의 경우 실습실 출입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주요내용
①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습실 대상)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점검표 작성·보관
▸실습실 일일 안전점검 일지 작성·보관
▸실습실 안전실태 자체점검표 제출(익년 2월)
▸수리·정비 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 확인
▸계절에 따른 위험 요소 발생 요인 조치
응급 대응 및
보호체계 마련
주요내용
① 응급대응 및 보호 체계 마련
▸사고발생 위험이 있거나 재해 발생 시 즉시 대피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후송 등 학생 보호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 및 후속조치 마련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에 사안 보고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신청

8.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 보호, 교사·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안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예방	관련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 수립 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유치원: 매년 1회 이상 실시 ▸초·중학교·고등학교(특수,각종 포함) : 반기별(학기별) 1회 이상 실시 ③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 실시 ④ 올바른 저작권 이용 교육 실시 ⑤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규칙 제정·운영
진단	주요내용	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초4, 중1, 고1 대상 전수 조사 실시 ② 위험사용자군 **추가심리검사** 실시 ▸**추가심리검사(행동평가척도)** 실시 ③ 위험사용자군 **과의존** 해소 관리 계획 수립
상담·치료	주요내용	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단계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1단계: 학교, 2단계: 유관기관, 3단계: 병원 ② 유관기관 연계 **과의존** 상담·치료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등 ③ 유관기관 연계 치유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사후관리	주요내용	① 위험사용자군 사후 관리 ② 정보통신윤리교육 자체 평가

【참고자료】
-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예시)
- 202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 계획
-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 표준안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고 사이트】
- 에듀넷의 정보통신윤리교육
- 스마트쉼터의 예방교육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업무매뉴얼

제 3 편 생활안전

<table>
<tr><td>업 무 명</td><td colspan="2">생활안전</td></tr>
<tr><td>관련법규</td><td colspan="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td></tr>
<tr><td>업무개요</td><td colspan="2">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 · 아동학대 · 학생자살사고 예방, 통학차량 · 통학로 · 수상 안전, 학생보호인력 · 출입통제시스템 · CCTV 운영 관련 업무</td></tr>
<tr><td rowspan="6">주요내용</td><td colspan="2">단 위 업 무</td></tr>
<tr><td>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td><td>6. 수상 안전</td></tr>
<tr><td>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td><td>7.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운영</td></tr>
<tr><td>3. 학생자살사고 예방</td><td>8. 학교출입관리</td></tr>
<tr><td>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td><td>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td></tr>
<tr><td>5.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만들기</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교육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2025 위기학생지원 계획
○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5)
○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교육부 2024.12.)
○ 학생자살사고 예방
- 학생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교육부, 2011)
-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보호인력 운영: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 출입통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내 CCTV: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td></tr>
</table>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생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노력,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2025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교육자료】 - 온마음터(on-maum.or.kr)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dbran.edunet.net)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stopbullying.re.kr)	주요내용	① 학교폭력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운영 ②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③ 학교폭력 책임교사 임명 및 전담기구 구성·운영 ④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⑥ 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⑦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 및 교육적 해결 노력
학교폭력 피해상황 파악 및 처리 개요	주요내용	① 신고 접수 후 필요 시 피·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보호자에게 신고사실 통지 ②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 입증자료 수집 등 ③ 학교폭력 확인서 받기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목격학생 대상 ④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동의(서면확인) 시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자체해결 요건 미 충족이거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⑤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회복 및 화해중재 운영**
【참고자료】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주요 대처 요령		
추수지도	주요내용	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치료 및 선도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관리를 통한 학생안전 보호와 아동 복지 증진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신고 및 처리 절차】** ①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 신고 → ② 경찰 및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참여) 현장조사 → ③ 응급의료조치 및 긴급격리조치 → ④ 학대혐의 판단 후 조치결정, 후속 관리 **※ 미신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관찰, 상담, 지속적인 관심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활용 ②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인지 또는 의심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시·군·구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시·군·구(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은 기존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동행 요청 가능 ③ 아동학대 사안보고: 중대·심각한 사안(언론보도 포함)에 대해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사안보고서 제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피해아동의 취학, 진학 또는 입소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5조, 제46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주요내용	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피해아동의 신변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②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학적관리 ▸비밀전학: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 ▸**등교학습지원: 학대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적처리(출석인정):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 시 학교는 적극 협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관계부처합동 대책, 2016. 3. 29.(학부모교육)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실시 ② 학생 대상 교육: 성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실시** ③ 학부모 교육 ▸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학교행사 시 ▸교육자료 배포, 동영상 상영, 강의 등

3. 학생자살사고 예방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사회정서교육) 강화로 학생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학생 자살 및 자살(자해)시도,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책 수립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예방교육	관련근거	◦ 2025 위기학생 지원 계획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내용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사회정서교육) 실시 ▸대상: 학생 ▸시간: 교과, 창체 연계 6시간 이상 실시 ▸방법: 담임교사를 통한 조·종례시간 상시 교육 권장 ② 자살예방교육 ▸대상: 공공기관 및 학교 ▸시간: 연 1회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교육자료 및 참고자료】 -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함께학교 (www.togetherschool.go.kr) → 교원연구실 → 교수학습자료 -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 자살예방 애니메이션-초등편 - 자살예방 애니메이션-중등편		
고위험 학생 관리	주요내용	①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및 내용 '2025 위기학생지원계획 참조' ▸자살 및 자해 고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위기관리 위원회 운영 ②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발견 ▸상담기관 연계 및 심리검사, 의료비 지원 ③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고 대처	관련근거	◦ 2025년 위기학생지원계획
	주요내용	① 학생자살 발생 시 보고 ▸자살사안 발생 시 신속한 위기개입으로 학교 정상화 ▸24시간 이내 유선 보고(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7일 이내 업무관리시스템사안보고(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교육부) ②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향후 대책 논의 (위기지원컨설팅) ③ 유가족 및 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트라우마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 ④ 위기극복을 위한 교내 지원 ▸지역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계 지원 ⑤ 자살시도 사안보고(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자해 사안보고(학교→교육지원청)
【참고서식 및 자료】 - 자살사안 보고서 - 자살(자해)시도 보고서 - 경위보고서		

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및 신고절차와 운영자·운전자의 법적 의무 등 안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참고자료】 -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주요내용	① 어린이 통학버스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 대안, 외국인),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②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차종: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보험가입(보험업법 제4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자동차구조 색상 황색,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조절가능), 어린이통학버스 표시등 등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시 서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학교(원)등기(록)·인가·신고서	주요내용	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 보기 쉬운 곳에 부착 ②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 ▸구조·장치변경승인신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구조·장치변경작업: 자동차정비소 ▸구조·장치변경검사: 교통안전공단(승인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과 운전자의 의무 【참고자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기록	주요내용	① 통학버스 안전점검 ▸차량 일일점검대장 및 정비대장 비치 ▸수시로 차량 점검 실시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분기별, **학교안전지원시스템**) ② 통학차량 보유교: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차량정보 등 입력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 및 운영자의 의무 ▸매년 2년마다 정기교육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 어린이나 유아가 승하차시 점멸등 장치 작동 -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 후(좌석안전띠 착용 포함) 출발 - 내릴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 차량운행 종료시, 반드시 어린이나 유아 하차여부 확인 및 “하차확인장치” 작동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경우 보호자 동승(도로교통법 제53조3항 각호 해당 보호자)

5.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만들기

학생의 등하굣길 생활 속에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구현 및 등하굣길 위험요소 실태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단위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지킴이 조직 및 운영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0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주요내용	① 학교별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② 교통 안전지킴이 구성 ▸교통안전 담당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녹색어머니회 등), 전담경찰관,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 기존 학교조직을 최대로 활용하여 구성 ③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교차로·횡단보도 안전통행지도, 무단횡단 예방지도) 실시 ④ 월 1회 이상, '교통 안전지킴이 협의회'를 통해 피드백 및 사후대책 추진 ⑤ 등하굣길 교통안전의 날 운영(월 1회) ⑥ 교통안전 예방 및 캠페인 활동(개학기 학교주변 합동 안전점검 시 캠페인 등) 활동 전개
단위학교 교통안전 자체점검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작성 →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 (시장·군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개교·개원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 교육감(교육장 위임)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주요내용	① 단위학교별 학생안전 통학로 자체점검 실시 ▸학생안전통학로 자체점검표를 활용한 요소별 자체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조치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요소별 안전조치를 통하여 학생안전 통학로 확보 ▸스쿨존 지정 초등학교의 경우, 스쿨존 안전시설물(안전표지, 보호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미비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시설 직접 개선요청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 【교육자료】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교통안전) (홈페이지> 교육정보 > 학교안전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교통안전(스쿨존)편)(2016)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교통안전) 링크자료	주요내용	①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체험중심 교통안전 교육 실시 ②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초·중·고등학생 교통안전 교육 실시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③ 교육과정과 연계된 이론 및 실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관련 안전수업 적극 활용 ④ 각종 학부모 관련 회의 시 교통안전 교육내용 계도 ⑤ 등하굣길 교통안전의 날 운영(월 1회) ▸학교장의 주도하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지역주민과 연계한 각종 홍보활동 및 교통안전 행사 진행

6. 수상 안전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이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부각되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수상 안전관리 협력 및 상황관리	관련근거	◦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계획
	주요내용	① **수상** 안전관리 관련 비상연락망 구성·운영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비상연락망 구축 ▸유관기관과의 SMS 문자송신 서비스 활성화 등 ② 보고방법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해당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 동시 보고 ③ 보고내용 ▸물놀이로 인한 사망 · 실종 현황 ▸일시, 장소, 사고원인, 인적사항, 사고내용, 조치사항 등
【참고서식 및 자료】 - 학생안전사안보고서 - 물놀이안전관리비상연락망 현황 - 익수사고발생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철저	주요내용	**① 학교급별 맞춤형 수상 안전 사고 예방** **▸ 수상 안전사고 예방 집중 주간 운영** **▸ 학생 주도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 활성화** **② 체험 중심의 수상 안전사고 대응 역량 함양** **▸교과 연계 및 수상안전 위험 대처 능력 향상** **▸교직원의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역량 강화** **▸안전 체험관을 활용하여 수상안전 예방 프로그램 강화** **③ 수상 사고 예방 및 관리 협력 체계 구축** **▸합동 안전 점검 및 단위학교별 여름방학 전 학부모 대상 수상안전사고 예방 집중 안내 등 홍보 활성화**
【교육자료】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안전교육 > 자료실 > 안전교육자료실 > 7대안전 > 신체활동안전 > 물놀이 안전 - 국민재난안전포털(행정안전부)>재난예방대비 >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상 지역 모니터링 및 예방 캠페인 전개	주요내용	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및 예상 지역 모니터링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여름 휴가전후 시기에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 실시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과 협력 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지자체, 소방서(센터) 등과 협력하여 휴가철 유원지에 대한 안전 캠페인 전개 ▸학교 내외, 학생 · 학부모 대상 자율적 캠페인 활동 ▸119시민수상구조대, 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원봉사단 등과 협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수상 안전관리 협력 및 상황관리	관련근거	◦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계획
	주요내용	① **수상** 안전관리 관련 비상연락망 구성·운영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비상연락망 구축 ▸유관기관과의 SMS 문자송신 서비스 활성화 등 ② 보고방법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해당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 동시 보고 ③ 보고내용 ▸물놀이로 인한 사망 · 실종 현황 ▸일시, 장소, 사고원인, 인적사항, 사고내용, 조치사항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철저	주요내용	**① 학교급별 맞춤형 수상 안전 사고 예방** **▸ 수상 안전사고 예방 집중 주간 운영** **▸ 학생 주도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 활성화** **② 체험 중심의 수상 안전사고 대응 역량 함양** **▸교과 연계 및 수상안전 위험 대처 능력 향상** **▸교직원의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역량 강화** **▸안전 체험관을 활용하여 수상안전 예방 프로그램 강화** **③ 수상 사고 예방 및 관리 협력 체계 구축** **▸합동 안전 점검 및 단위학교별 여름방학 전 학부모 대상 수상안전사고 예방 집중 안내 등 홍보 활성화**
안전사고 예상 지역 모니터링 및 예방 캠페인 전개	주요내용	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및 예상 지역 모니터링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여름 휴가철 전후 시기에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 실시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과 협력 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지자체, 소방서(센터) 등과 협력하여 휴가철 유원지에 대한 안전 캠페인 전개 ▸학교 내외, 학생 · 학부모 대상 자율적 캠페인 활동 ▸119시민수상구조대, 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원봉사단 등과 협력

7.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안전대책)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배치 등)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배치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참고자료】 - 2025학년도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운영개요 ▸기간: 1학년도 단위 운영 ▸대상: 단설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주요 활동내용 및 범위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 및 교문 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기타 학교의 장과 봉사자와 협의한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② 운영방법 ▸기본방침: 모집공고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 (경기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자원봉사센터 활용) ▸위촉방법: 학교장 위촉 ▸운영방식: 자원봉사자 운영(학부모봉사자, 외부모집봉사자) ※ 사회복무요원(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적극 활용 가능 ▸활동일: 학생의 교육활동일 중 봉사자와 상호협의 결정 ▸활동시간: 1일 1인 1팀(3시간 미만) 활동, 2팀 이상 운영시 2인 이상 위촉 ※ 학교실정 상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 1인이 2팀 봉사 가능하나, 자원봉사활동 기본 원칙(무대가성, 자발성)과 봉사활동실비는 대가성 금품이 아닌 실비 성격임을 인지하도록 안내 강화 ▸운영비지원: **교당 연 12,600천원**(봉사활동운영비, 봉사활동실비)
학생보호인력 활동관리 학생보호인력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 가능	주요내용	① 학생보호인력의 관리 책임자: 학교장 ② 자원봉사자로 위촉 후 활동을 개시 ③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봉사직임을 안내 ④ 아동학대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실시(매년) ⑤ 근로계약서, 봉사활동 협약서 작성 금지 ⑥ 자원봉사활동 대장은 학생보호인력이 직접 작성 금지 ⑦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금지 ⑧ 호칭은 '지킴이 선생님'으로 권장 ⑨ 자원봉사제도에 따른 운영 취지에 맞는 적합한 대우 ⑩ 학생보호인력 복장은 봉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상호협의 후 결정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생보호인력 운영 절차	주요내용	① 학생보호인력 소요 제출(2월) ② 예산지원 대상교 확정 및 지원(3월) ③ 학생보호인력 운영 ▸학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학대경력, 성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 실시 ▸학생보호인력 위촉 후 활동 개시 ④ 학교안전지킴이 대상 학교 자체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운영 계획, 학생 지도 시 금지 행위,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등 ⑤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결과 평가 ⑦ 운영비 정산

8. 학교출입관리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 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출입증 발급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2025.3.1.)**
【첨부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 사진(3.5㎝ × 4.5㎝) 1매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주요내용	① 출입증의 종류 ▸일반출입증(일반차량출입증 포함),일일방문증(일일차량출입증 포함) ② 발급권자: 학교장 ▸출입증 발급 업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 ③ 출입증 발급 ▸일반(차량)출입증: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 후 신청 → 일반출입증 발급(학교장) ▸일일(차량)방문증: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 일일방문증 발급(학교장) ④ 발급통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교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기타 학교관리·학생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출입관리	주요내용	① 학교출입문 통제: 등·하교 시간 외에 출입문 전부 폐쇄 ※ 단, 학교장 승인에 의해 개폐시간 조정 가능 ② 분실 시 즉시 분실신고서 제출 ③ 단체방문객 출입: 단체방문신고서 작성·제출 → 허가(학교장) ④ 학교 출입수칙의 게시 ▸학교개방시간, 학교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 ⑤ 학교 출입거부·퇴교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 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 ⑥ 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무단출입자 신고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절차에 따라 출입증 발급 안내 ⑦ 학교 주변 위협요소 발생에 따른 대응 ▸(교내) 학생보호인력 추가 배치, 외부인 학교 출입통제 강화 ▸(교외) 통학로 주변 CCTV 확인 및 증설 요청(자치단체장), 아동안전지킴이 순찰구역 지정 확인 및 요청(경찰서장)
학교 출입 이외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준용		
퇴교 요청 불응 시 학교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여 도움 요청 학교 주변 위협요소(강력범죄자 출소 등) 발생 시, 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안전시설 확보 및 치안강화 적극 협조 요청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출입증 취급 시 준수사항	주요내용	① 점검확인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 확인·점검(연 1회 이상) ② 대장관리 ▸출입증 관리대장 기록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주의 ③ 관리, 회수·반납, 폐기: 관리대장에 의한 반납 및 폐기

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과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위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를 통한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 내 CCTV 설치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설치 기본 고려사항 ▸**설치사양: 200만화소 이상 권장 및 TTA 인증제품 사용** ▸설치장소: 안전생활 취약지역(출입구, 사각지역, 중요지역 등) ② 사전 의견수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외부 공간(운동장 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사전의견수렴 생략 가능 ▸실내 공간 - CCTV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특정실(교실, 식당, 강당, 실험실 등)의 경우 매년 사용 대상자가 전원 동의하는 경우에만 운영 **[참고]** 국가인권위원회「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2012.2.23.)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③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필수) ▸설치 목적,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카메라 대수, 위치 등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필수) ▸기재사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교문 또는 교문인접 필수 설치
CCTV 운영	관련근거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설치·운영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에 따라 주기적 점검 실시 (월별 또는 분기별) ▸CCTV 업무 관련자(책임관,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 등)에 대해 제반 교육 실시 ② 영상정보 열람 청구 ▸ 개인정보 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가능 ▸ 열람 청구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관리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제3자에게 제공가능 **③ 영상정보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며,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해야 함. 단, 보유기간 최소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30일 이내로 지정**

제 4 편 재난안전

<table>
<tr><td>업 무 명</td><td colspan="2">재난안전</td></tr>
<tr><td>관련법규</td><td colspan="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식품위생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td></tr>
<tr><td>업무개요</td><td colspan="2">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교육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안내</td></tr>
<tr><td rowspan="8">주요내용</td><td colspan="2">단 위 업 무</td></tr>
<tr><td>1. 대설·한파</td><td>8. 화재</td></tr>
<tr><td>2. 폭염</td><td>9. 유해화학물질</td></tr>
<tr><td>3. 풍수해(태풍·집중호우·강풍)</td><td>10. 식중독 발생 시 단계별 대처요령</td></tr>
<tr><td>4. 지진(지진해일)</td><td>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td></tr>
<tr><td>5. 황사</td><td>12. 민방위 훈련</td></tr>
<tr><td>6. 미세먼지</td><td>13. 교육시설공제</td></tr>
<tr><td>7. 오존</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경기도교육청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5)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5)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4)
○ 교육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플랫폼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경기도교육청, 2015.)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안전교육 - 안전교육 자료실)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경기도교육청 - 교육정보 - 학교안전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 자료(유튜브 검색 가능)
○ 미세먼지: 수도권대기환경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연구시설공제 관련)</td></tr>
</table>

1. 대설 · 한파

폭설·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적설량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령 ◦ 한파: 저온의 한랭기단이 들이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

기상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30cm이상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예방단계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시행 ▸대책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 ※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명확한 임무 부여 ▸재난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대비 안전훈련 및 계기교육 실시 ▸실별 피난로 및 대피장소 지정 ② 교육시설공제 가입(건물, 부속물, 물품) ③ 제설물품 구입(11월) ▸염화칼슘, 모래, 눈삽, 빗자루, 넉가래 등 ④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조립식, 경량철골조, 체육관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경량철골조 건물 지붕, 연결통로의 접합부 점검 및 보수 ▸지붕 처마 홈통은 최소의 규격으로 견고하게 설치 ▸과거 대설 피해가 있었던 학교는 유사건물에 대한 점검 ▸통학로 등 교내 빙판제거 및 각종 배관 동파 점검 ▸수도 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관심 ~ 주의 단계: 주의보 발령 시 ▸징후 감시활동: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재해 위험요소 점검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실외 수업 자제 ② 경계 단계: 경보 발령 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실외 수업 금지 ▸**단축수업, 휴업 조치 검토** - **기상특보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학사운영 조정 시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시설물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대설 취약시설(붕괴, 눈사태 등) 지정 및 접근금지 조치 ▸제설장비, 인력, 제설물품(염화칼슘, 모래) 확인 및 제설 작업 실시 ③ 심각 단계: 대규모 피해 예상 시 ▸비상 대책본부 운영 - 근무 시간은 기상 상황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이행 - 학생 귀가, 휴업 등 적극 검토
대응단계	주요내용	①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전교생에게 명확한 피난 지시 ▸지정된 장소로 신속히 대피(운동장, 인근 장소 지정) ② 대피 후의 안전 확보 ▸학생 인원 파악, 보호자 연락, 귀가조치 검토 ▸교육시설물 등 피해상황 파악 등 정보수집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제설도구를 이용한 제설작업 실시 ③ 시설물 붕괴 또는 부상자 발생 시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보호자 연락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메일 보고 후 공문 시행)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접근 금지 조치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대설.한파 후 점검사항 ▸대설 후 - 통학로 및 교내 제설 작업, 건물 지붕, 옥상 등 쌓인 눈 제거 -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반드시 실시 후 학생 입실 조치 ▸한파 후 - 통학로 및 교내 빙판 제거 - 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 동파 점검 ②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학교장**의 판단 아래 조기귀가, 임시휴업 조치 ▸교육시설물 피해가 있을 경우 인근학교 이용, 2부제 수업 등 수업대책 강구 ③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피해원인 조사·분석, 유사사고 방지·예방대책, 복구 계획 수립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메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정보망에 사고 통보 후, 보상 가능할 경우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정보망으로 신청 ▸피해시설 복구·정비 소요예산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보

2. 폭염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폭염: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기온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령

기상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관련 질병

◦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부음
◦ 열탈진: 피로감, 두통, 구역질, 구토 증상
◦ 일사병: 두통, 위약감,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피부가 차고 젖어 있으나 체온은 크게 변동 없음
◦ 열사병: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럼증, 구토, 의식저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지만 땀이 나지 않음
◦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 열실신: 일시적 의식 소실

예방·대비단계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주요내용	① 폭염 대응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대책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상황 보고 체계 확립 ▸폭염 대비 학사운영 방안 수립 ▸일기예보, 폭염특보 발령 여부 확인 ②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홍보 ▸폭염 대응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내용 탑재 등 ▸학생 건강상태 체크 및 폭염 취약 질환 보유 학생 파악(특별관리) ▸응급처치 물품 구입: 생리식염수, 얼음주머니, 체온계, 비상구급품 등 ③ 급식관련 위생관리 철저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점검 ▸손, 재료, 조리기구 등 급식관련 위생관리 강화 ▸조리된 식품은 방치하기 말고 신속히 배식 후 잔반 처리 ④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 및 과부하 대비 변압기 사전 점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응·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 하에 단축수업, 학생 귀가 조치 검토 ▸체육활동 등 실외, 야외활동 자제 ▸실내 적정온도 유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평균 28℃ 이상 유지 단, 학교 · 도서관 · 콜센터 ·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 유지 가능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② 경계 단계: 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 하에 단축수업, 학생 귀가 조치 검토 ▸체육활동 등 실외, 야외활동 금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재점검 ③ 기타 사항 ▸단축수업, 휴업, 피해학생 발생 시 교육청 조치결과 보고, 학부모에게 통보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메일 보고 후 공문 시행) →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메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피해 학생 및 교직원 파악 · 조치, 필요시 건강진단, 병원 진료

3. 풍수해(태풍 · 집중호우 · 강풍)

풍수해(태풍 · 집중호우 · 강풍)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개념 및 업무처리 절차	주 요 내 용
개념	◦ 태풍: 적도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써, 호우와 강풍을 동반하며, 홍수, 풍랑, 해일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자연 현상 ◦ (집중)호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강우량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령 ◦ 강풍: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풍속에 따라 주의보, 경보를 발령

기상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강풍	평균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단, 산지의 경우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평균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단, 산지의 경우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예방단계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시행 ▸대책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 ※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명확한 임무 부여 ▸재난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대비 안전훈련 및 계기교육 실시 ▸실별 피난로 및 대피장소 지정 ② 교육시설공제 가입(건물, 부속물, 물품) ③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위험요소 사전 제거 ▸지붕, 홈통, 옥상, 하수도, 배수구 정비, 낙엽 등 이물질 제거 ▸옹벽, 축대, 담장, 건물 연결 통로 등 교내 붕괴 위험지역 점검 ▸학교주변 공사장 및 붕괴위험 지역 파악(공사 담당자 연락처 파악)

개념 및 업무처리 절차	주 요 내 용	
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관심 ~ 주의 단계: 주의보 발령 시 ▸징후 감시활동: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재해 위험요소 점검 ② 경계 단계: 경보 발령 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확인 ▸단축수업, 휴업 조치 검토 ▸학교시설물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 금이 가거나 깨진 유리창 교체 - 노후 되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 보강 - 교내 배수, 누수 상황 파악, 침수 예상지역 모래주머니 적재 - 붕괴위험 지구, 균열이 있는 옹벽 응급조치 및 출입통제 (옥상 포함) ③ 심각 단계: 대규모 피해 예상 시 ▸비상 대책본부 운영(근무 시간은 기상 상황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 이행 : 학생 귀가, 휴업 등 적극 검토
대응단계	주요내용	① 태풍, 호우 시 ▸실시간 기상상태 파악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면 학생들을 창문에서 멀리 이동 조치 ▸창문 파손에 대비하여 창문을 닫고 필요 시 테이프 고정 ▸파손, 탈락된 파편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외부 출입 통제 ▸교내 우천로 등 가설건축물 주변에 학생들의 접근 통제 ▸하천 부근의 학교는 하천의 범람여부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②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전교생에게 지정된 장소로 피난 지시 ▸대피경로의 안전 확보 ▸수도, 가스밸브, 전원 모두 차단 후 대피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이동 ③ 대피 후의 안전 확보 ▸학생 인원 파악, 보호자 연락 등 조치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교육시설물 등 피해상황 파악 등 정보수집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유선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메일 보고 후 공문 시행)

개념 및 업무처리 절차	주 요 내 용	
복 구	주요내용	① 피해상황 확인 및 보고 ▸피해액 산출, 피해 지역 접근 금지 라인 설치 ▸전기, 가스, 수도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후 사용 ▸피해시설 응급조치 및 학교시설 안전점검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메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② 등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학교장**의 판단 아래 조기귀가, 임시휴업 조치 ▸교육시설물 피해가 있을 경우 인근학교 이용, 2부제 수업 등 수업대책 강구 ③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피해원인 조사·분석, 유사사고 방지·예방대책, 복구 계획 수립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4. 지진(지진해일)

지진(지진해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업무처리 절차	주 요 내 용
개념	◦ 지진: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해일(쓰나미): 해저나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바다 밑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아서 평소와는 다른 높은 파도로 되는 현상
예방단계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참·반 5분 안전교육 자료 (유치원,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 - 나·참·반 안전교육동영상(지진·해일편) 자료 - 나·참·반 안전교육동영상(지진) 자료 - 지진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참고자료】 - 지진대피소 현황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 시행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 지진대피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비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실질적인 지진대피 훈련 및 계기교육 실시 ▸피난로 및 대피장소 지정 ▸위험을 학생 스스로 확인·판단하여 대피하도록 훈련 ②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조치 ▸건물 기초, 지반, 균열 등 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 ▸노후시설물, 옹벽, 담장, 지붕 등 지진 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 ③ 교육시설물 내진 보강 ▸교육청, 교육부 내진 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지진 발생 전(징후 발견 또는 주의보 발령 시) ▸징후 감시활동: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기상청, 안전디딤돌 등 기상수신 서비스 사전 가입 ▸비상근무체계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확인 ▸학교시설물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방재물자 구비: 대피유도 장비, 구급장비, 비상배낭, 방송장비 등 ▸인접 학교 또는 임시시설 등 숙지

업무처리 절차	주 요 내 용	
대응단계	주요내용	① 지진 발생 시 ▸학생 긴급대피 ▸대피 후의 안전 확보 - 인원 파악 및 부상자 확인 - 부상자 응급조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후 학생 인계 조치 ② 후속 조치 ▸교사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위험지역 통제 ▸등 · 하교 안전 및 휴업 조치* ▸신속한 상황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메일 보고 후 공문 시행) *휴업 가이드라인 : 기상특보 발령 시 등 · 학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 등 조치는 학교 실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 재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교육감 조치 가능
【학생 긴급대피 요령】 - 진동 발생 즉시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 - 진동이 멈추면 출입문 쪽 학생부터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운동장, 공터 등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 ※ 진동이 멈추면 방송, 타종, 음성,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전교생이 대피토록 하고, 평소 학생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 - 흔들림 후, 화재 등 2차 재난 방지를 위해 가스, 전기 등 전열기 차단		
복 구	주요내용	①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지진 상황 종료 후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반드시 실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학생 입실 조치 ※ 가스, 전기, 배관, 상하수도 등 폭발이나 화재, 붕괴 위험성 확인 ▸**학교장**의 판단 아래 조기귀가, 임시휴업 등 적극 조치 (조치 후 교육청 보고) ▸교육시설물의 피해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근 학교 이용, 2부제 수업 실시 등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②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학교 피해시설 응급복구 ▸위험구역 설정 및 관리: 위험구역 내 학생의 강제대피, 통행 제한 ▸2차 피해 예상 시설점검 및 안전조치 :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물 피해 원인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 ▸피해시설 복구 · 정비 소요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③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메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피해 발생 시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5. 황사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황사: 중국과 몽골 내륙 등 국외에서 발생하여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누런 모래

기상특보 발효 기준

종류	주의보	특보(경보)
황사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예방 · 대비단계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주요내용

① 황사 대응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 ▸비상대책반 구성 및 직원별 업무 분장
-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상황 보고 체계 확립
- ▸황사 대비 학사운영 방안 수립
- ▸일기예보, 황사특보 발령 여부 확인

② 황사 대비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홍보
- ▸황사 대응 행동요령,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내용 탑재 등

③ 급식관련 위생관리 철저
-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점검
- ▸손, 재료, 조리기구 등 급식관련 위생관리 강화
- ▸식품 조리, 가공 및 운반 시 오염 방지 철저

대응 · 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특보(경보) 발령 시
- ▸학교장 판단하에 단축수업, 등하교 시간조정, 임시휴교 등 적극 검토
- ▸체육활동 등 실외, 야외활동 금지

② 기타 사항
- ▸단축수업, 휴교, 피해학생 발생 시 교육청 조치결과 보고, 학부모에게 통보
- ▸피해 학생 및 교직원 파악 · 조치, 필요시 건강진단, 병원진료
- ▸상황 종료 후 실내공기 환기, 환경 정화, 학교 실·내외 방역 및 먼지 제거

6.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생성되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

기상특보 발효 기준

◦ **미세먼지 예보제 : 환경부 시행**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미세먼지 경보제 : 경기도 발령**

대상물질	주의보	경보
미세먼지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초미세먼지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예방·대비단계

주요내용

① 「대기오염대응 세부행동요령」 작성
-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교당 1명 이상)
- ▸등하교시간 조정·휴업 관련 행정사항
- ▸미세먼지 민감계층 파악 및 관리 계획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응단계별 공기정화장치 작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

※ 세부행동요령은 학교안전계획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② 학생 및 보호자 대상 미세먼지 대비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홍보
-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내용 탑재 등

③ 급식 관련 위생관리 철저
-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점검
- ▸손, 재료, 조리기구 등 급식 관련 위생관리 강화
- ▸식품 조리, 가공 및 운반 시 오염 방지 철저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3월) (유치원,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
- 미세먼지 7대 표준안 자료(교육부) (유치원, 초1~2, 초3~4, 초5~6)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 자료(2017)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응·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등급 “나쁨” 이상일 경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관리대책 이행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 ▸실외수업 자제,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② 주의보 발령 시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학사 운영조정 검토 ▸창문을 닫고, 가능한 공기청정기 작동, 실내 물걸레 청소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③ 경보 발령 시 ▸학사일정 고려하여 단축수업,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등 적극검토·실시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창문을 닫고, 가능한 공기청정기 작동, 실내 물걸레 청소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개인 위생 철저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교육 등 조치사항 보고(경보 발령일 다음 날까지) ④ 주의보, 경보 해제 후 ▸학교별 실내외 방역 및 청소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 ▸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휴식 등 적정 조치

7. 오존

오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

오존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오존(O_3): (O_2)에 산소원자(O)가 더해진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 - 상층의 오존은 해로운 단파장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 - 지표 근처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
오존의 위험성	◦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하여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식물의 수확량 감소, 건축물 부식, 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 악영향 ◦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기침, 숨참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고농도 오존은 기도나 폐포를 손상 또는 약화시킴
오존 예•경보제	◦ **오존 예보제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대기질통합예보센터) 시행**

예보구간	등 급(ppm)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농도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 **오존 경보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발령**

구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	0.12ppm 이상	0.30ppm 이상	0.50ppm 이상
해제기준	0.12ppm 미만	0.12ppm 이상 0.30ppm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0.30ppm 이상 0.50ppm 미만일 때 경보로 전환

◦ 오존 오염도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예방대책	주요내용
	① 오존 예보가 '나쁨' 이상인 경우 ▸오존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5시에 오존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므로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오후 2~5시를 피해서 실시 ② 오존 경보(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 ▸현재 대기질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실외활동 자제, 창문 닫기 등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실행

【참고자료】

- 오존,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환경부)

8. 화재

화재로부터 인명, 시설물, 물품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table>
<tr><th>세부업무명</th><th colspan="2">관련근거 및 주요내용</th></tr>
<tr><td rowspan="2">화재예방</td><td>관련근거</td><td>◦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td></tr>
<tr><td>주요내용</td><td>① 소방계획서 작성
: 소방대상물을 사용 개시할 때, 계획변경 시 반영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목 적: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선임대상: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자 격: 감독직에 있으며 규정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선임할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소속 · 직위 · 성명 및 증빙서류 첨부)
☞ 소방안전 관리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자위소방대 편성: 전체 교직원 편입, 임무 부여
<table><tr><th>구분</th><th>자위소방대 임무</th></tr><tr><td>대장</td><td>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td></tr><tr><td>부대장</td><td>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td></tr><tr><td>지휘반</td><td>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반의 임무조정, 화재진압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td></tr><tr><td>진압반</td><td>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td></tr><tr><td>구조구급반</td><td>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td></tr><tr><td>대피유도반</td><td>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td></tr></table>④ 화재예방 조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 실시
▸실별 화재예방 중점 추진: 과학실, 실험실 등
▸기숙사(합숙소 포함), 급식실 등 화재취약시설 집중 점검
▸실별 책임자
: 화기단속 등 당해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 조치
▸공공기관 당직근무자의 업무
: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⑤ 교육시설공제 가입(건물, 부속물, 물품)</td></tr>
</table>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비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주요내용	①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연 2회 이상 실시(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기록부 - 기록보관 2년)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급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유치원) (5월, 7월, 10월, 11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초등)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중등)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 (화재안전)(2016)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 (화재편)(2017)

② 소방점검

구분	외관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점검대상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외관점검 대상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전기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단,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 가능)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30일까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결과	2년간 점검결과 자체보관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에 대한 금지행위 명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 비상구(출입구)용접 등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행위 금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적치, 방화셔터구역 장애물 설치행위 등 금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틀)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 금지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방화구획, 방화문 임의변경, 무창층화 행위 등 금지

④ 화재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각 실 사용자 및 화기 책임자 최종 퇴실 시 전원차단 등 화기단속

▸건물 누수 발생 시 누수 원인 제거 및 전기안전점검 실시

▸화재 취약시설(폐휴지 보관 창고 등) 전기차단, 출입통제 및 잠금 철저

▸가전제품 및 콘센트 주변 먼지와 인화물 제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대응	주요내용	① 소방활동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화재경보, 대피, 소화 등 관련 조시 실시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미리 지정된 담당자가 즉시 교내 화재 발생경보 발령 ▸화재 발생여부 파악 후 119 신고 ② 대피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 ▸대피 후 인원 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 불안에 대한 대응, 필요 시 학생귀가 조치 ③ 학교 대책본부 설치 ▸피해상황 파악 및 교육청 · 유관기관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공문 시행)
대피 시 방화셔터가 내려왔을 경우 → 방화셔터의 비상구 열고 이동(소방훈련 시 교육 실시)		
복구	주요내용	①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교육시설물의 화재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근학교 이용, 2부제 수업 실시 등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②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학교 피해시설 응급 복구 ▸피해시설 복구 · 정비 소요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시설물 피해 원인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 ③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④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정보망에 사고 통보 후, 보상 가능할 경우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정보망으로 신청

9.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개념	◦ 화학물질 사고: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 ◦ 특징: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 발생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대응이 미흡한 경우, 치명적인 재난으로 확대됨. 또한, 화학물질이 공기와 혼합되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큼	
예방·대비단계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주요내용	①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② 교내 화학물질 누출 대비 예방 및 점검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학교가 보유한 화학물질 이름, 보관장소, 공급업체 연락처 등 작성·보관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위험 발생 대비 경보체계 마련 ③ 학교 주변 산업단지 유해물질 누출 대비 ▸학교 주변 산업단지 현황 및 보유물질 종류, 업체 연락처 등 숙지 ▸비상상황 발생 대비 비상대책반 편성·운영
【참고자료】 -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초등, 중등)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대응·복구단계	주요내용	① 교내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대응·복구 ▸상황전파(학교 내, 인근학교, 119신고) 후 신속한 대피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감염지역 접근 금지 조치 ▸누출물질 제거 시도 X ② 학교 주변 누출사고 발생 시 ▸119 및 112 신고 및 대피(바람을 마주보고) ▸라디오, TV,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상황 주시 ▸재난대응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 ③ 학생 대피 및 안전 확보 ▸학생 인원 파악 및 부상자 파악 ▸필요 시 비상대책반 운영 및 교육청 보고 ▸학교가 안전하다는 확인될 때까지 진입금지 및 임시휴교 조치

10. 식중독 발생시 단계별 대처요령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담당자별 임무를 숙지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처
※ 본 자료는 업무매뉴얼-초등교무학사/중등교무학사 Ⅴ.기타 부분 『제5편 학교급식』의 『4.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자료임

구분		수행 사항	비고
평상시	주요 내용	• 식중독 발생 의심환자 모니터링 관련 교직원 사전 연수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식중독 모의훈련	
	세부 내용	▷ 식중독 발생 의심환자 모니터링 관련 교직원 사전 연수 실시【부록 1 참조】 **식중독 의심환자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 - 담임교사 유증상자 조사 시 학생들의 동요 및 또래 증상으로 환자수가 과도하게 카운트되지 않도록 연수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의 조사를 금지토록 교육)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식중독 발생 양상과 증상 등 정확히 안내, 학급에서 학생의 구토물 처리 · 세척 · 소독, 학생 손씻기 교육 등 2차 감염 예방 관리 ※ 교내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안내장 발송 【부록 9 참조】	
		▷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교사의 모니터링 등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 식중독 모의훈련 - 단위학교 식중독 모의훈련 【부록 2 참조】 : 식중독의심환자 발생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하여 식중독비상대책반 모의활동 실시(환자발생시 대처능력 함양) - 유관기관 합동 식중독 모의훈련 **【부록 2-2 참조】** :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비상대책반 구성원 유관기관
<1단계> 발생인지	주요 내용	•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유증상자만 파악-전수조사 아님)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보고 → 최초 환자수 집계 • 학교장 주재 긴급회의	
	세부 내용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보고 - 평상시와 달리 보건실 이용학생 중 동일증세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다수 있을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의심 ⇒ (집단 식중독 발생 인지시점) 보건실 이용 환자수 집계 ⇒ 학교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보건실은 평소 방문 수준의 학생수 및 증상과 비교 필요 - 가검물 채취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도착시까지 학생들 귀가 보류(보건소 협의)	
		▷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 【부록 3 참조】 - 증상 호소 학생만 조사한 후 보건실로 보냄 -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조사, 전교생 대상 및 학년·학급 전체 대상의 전수조사 및 교내방송, 전체문자, 반별	환자파악팀

구분		수행 사항	비고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 조사 금지 - 환자발생 분포와 원인을 파악, 반별 집계표 → 환자파악팀에게 제공 - 병원이송 및 결석, 조퇴학생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사전 파악(개별 역학조사 관련) - 식중독 증세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보고	
		▷ 최초 환자수 집계 - 동일증세의 보건실 이용 학생, 조퇴· 결석 학생수를 합산하여 최초인지 시점 환자수로 집계 - 담임교사의 1차 조사 결과 정리하여 1~2개 학급만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발견 시(실습,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간식, 체육대회, 월요일의 경우 주말 결혼식 참석 등) 환자 발생보고에 반드시 포함	
		▷ 학교장 주재 긴급회의(학교급식식중독 비상대책반) 【부록 2. 1차회의자료 참고】 - 대상: 관리자, 부장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영양사,** 행정실장 등 - 내용: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인지 최종 판단 - 결과: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으로 최종 결정시 교육청, 보건소(시·군·구청)에 신고 - 신고 시 내용: 인지시점의 일시, 최초 환자수, 유증상자 동일증세 등 현황, 발생경위, 특이사항 등 - 학교 준비자료: 유증상자(결석생포함)현황, 반별배치도(정수기, 화장실 위치 포함), 납품업체현황, 식단표	총괄대책반
<2단계> 발생신고	주요 내용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	
	세부 내용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의심」으로 판단 → 인지 후 즉시 유선으로 관할 교육청 및 시·군·구청(보건소)에 신고 및 보고 - 서면보고: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부록 5 참조】** - **즉시 신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근거: 식품위생법 제86조] ※ 주의: 보건소에 단순 문의 시 **'식중독 신고' 로 오인될 수 있음**	역학조사 협력팀
<3단계>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주요 내용	**•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 학교급식 중단 조치 결정**	비상대책반 구성원
	세부 내용	**▷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부록2. 2차회의자료 참고】** - 총괄대책반: 각 대책팀의 지휘 · 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보도에 대처, 치료 및 보상대책 수립, 급식중단 및 대처방안 등(관할 교육청 및 역학조사관 의견 참조)	

구분		수행 사항	비고
		- 환자파악팀: 기 파악한 최초 환자 추이 및 일일추가 환자발생 현황 파악 - 환자이송팀: 응급환자 등 발생시 환자후송, 입원학생 관리 - 역학조사협력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학교급식식중독 발생보고 및 결과보고 - 학사대책팀: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 학교장 주재 급식 중단 조치 결정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원인파악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잠정 중단 ※ 급식중단 여부는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최종결정(단, 급식시간이 촉박할 경우 역학조사반 도착 전에 학교장이 결정) ※ 급식중단 당일 대용식 구입 및 배식계획 수립 시행 - 대체 급식 마련(학교운영위원회), 가정통신문 발송(학교알리미 시스템 이용) 【부록 9-1 참조】 ※ 학교내 정수기 사용금지 결정 및 대책방안 마련 ※ 급식중단 기간의 개인별 도시락 및 음용수 지참,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대책, 끓인물 제공 등 대책 마련	
<4단계> 원인(역학)조사 [보건당국]	주요 내용	**• 식중독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 언론보도 대처**	비상대책반 구성원
	세부 내용	**▷ 식중독 원인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 • 음용수(정수기)채수 협조: 층별 정수기 위치 등 안내 ※ 보존식 144시간 보관 준수, 수거 시점으로부터 6일이내의 보존식만 제공하며, 수거 확인서 징구, 보존식(실제 제공된 식단)과 보존식 기록지 일치 여부 확인 ※ 보존식 훼손 금지	
		▷ 식중독 역학조사 협조 -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필요사항 협력(환자규모, 증상파악): 역학조사협력팀 가동 - 설문조사 및 채변검사(대변검체, 직장도말검체) 협조 • 학생: 발생규모에 따라 한 장소에 전교생 또는 환자를 집결시켜 일대일조사 또는 문항별 설명 후 반별 조사, 유증상자 채변검사 협조(집결장소 제공) • 급식실: **영양교사·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협조 - 외부반입 음식, 학교주변 판매식품 등 식중독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환례정의에 필요한 임상증상 중 '설사'의 정의: 24시간 내 3회이상의 수양변이 있는 경우(세계보건기구현장지침) 또는 250g 이상의 무른변이나 수양변이 있는 경우로 함**	

구분	수행 사항	비고
	▷ **학교 협조사항** -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보건소와 협의하여 학생 귀가 보류(단,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 이송), 학생 및 학부모 심리적 안정 도모(상황설명, 치료 내용, 치료비 대책 등을 안내) - 보건실 방문환자 역학조사 전 환자 약물투여 금지 - 급식실 현장보존 및 원인규명 방해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정수기, 지하수, 물탱크, 칼, 도마, 행주, 환경가검물 등 소독 및 청소금지 • 급식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언론보도 대처【부록 6 참조】** - <u>언론대응창구 반드시 단일화</u> • 가급적 학교관리자로 지정·운영 ※ 여러 교직원이 각각 자료를 제공할 경우 상이한 자료 제공으로 언론의 불신 초래 -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 제공 • 개인의 추측, 의견 등은 삼가, 유관기관 간 협의된 사항만 제공 • 그 외 진행사항(환자 수, 역학조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보건소등)에 문의하도록 안내 -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하여 정보 공유 • 유관기관(교육청, 시·군·구청, 보건소, 식약처 등)의 언론대응 창구를 확인하고 학교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체제 유지 • 전 기관 자료제공 시 유관기관 간 상호 확인하고, 가능한 동일시점의 동일자료 제공 ※ <u>단,「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 및 추가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언론대응 일원화</u> (언론사에서 공식자료 요구 시 식약처로 안내)	총괄대책반 언론대응창구 담당자
	▷ **교육청 협조사항** - 공동조리교의 경우 학교간 협조 조정 역할 수행 - 식단표, 급식일지,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환자 발생 분포도 및 급식 외 요인(현장체험학습, 외부음식 반입여부, 매점 판매식품 등)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 협력 및 급식재개 협의 - 관내 모든 급식학교에 위생관리강화 공문 및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확산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 노력 - 당해 학교 특별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위탁급식업체 운영학교 모니터링 관리 등 - 관계기관(학교, 교육청, 역학조사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여 정보 공조 체제 유지(환자명단, 진행사항, 언론대응 등)	교육청

구분		수행 사항	비고
		- 오염된 음식물 등 식품섭취 이외에 환자접촉, 구토물, 분변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교육청 내 관련부서 협력을 통해 예방 및 확산방지 철저	
		▷ **역학조사 실시 :** 시·군·구청 및 보건소 **【부록 7 참조】** - 설문조사 실시 - 채변검사(대변검체, 직장도말검체) - 보존식 수거 - 음용수 및 조리수 수질 검사 - 환경가검물 채취	시 · 군 · 구청 및 보건소
<5단계> 환자발생 일일보고	주요 내용	**환자발생 일일 현황 보고**	
	세부 내용	▷ **환자발생 일일 상황 보고【부록 4 참조】** - 학교는 환자발생 현황을 발생 익일부터 완치일까지 **매일 1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유선, 문자, 팩스 등) • 매일 17시 기준 환자 및 치료현황 엑셀로 작성 -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 및 심리적 안정 도모	환자파악팀
<6단계> 환자발생 익일이후	주요 내용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세부 내용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 · 소독 실시로 청결하게 유지 · 관리	
		▷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지도 및 가정과 연계 지도 - 급식실 및 화장실 등 교내 방역 실시 - 유증상자 사용 물품(의자, 책상, 소지품 등) 및 책상면, 손잡이 등 소독 실시 - 위생관리 취약분야 관리 대책 수립 - 매점에서 위생취약 제품 판매 금지 - 외부음식 반입 금지 - 정수기 급수 중단 및 끓인 물 제공 등 -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부정, 불량 식품 매식 금지 등 생활지도	
<7단계> 조사후 조치	주요 내용	**학교급식 재개 논의 및 준비 철저**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 **역학조사 결과 최종 보고(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세부 내용	▷ **학교급식 재개 논의** - **보건소 역학조사관(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총괄대책반

구분	수행 사항	비고
	- 단순 식중독 경우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발생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 요인이 없다고 판단 시 -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다고 판단 시 - 위생적 급식환경이 조성되며, 조리종사자 보균검사결과 안전하다고 판단 시 - 마지막 확진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에 급식 재개	
	▷ 급식 재개 준비 철저 - 급식실 청소 및 식기구 소독과 조리기기 작동점검 - 급식실 및 교내 방역 실시 - 조리종사자, 납품업체 교육 실시 - HACCP시스템에 의거 위생·안전관리 철저 - 학교급식 재개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 계약해지 시 급식업체 재선정 방안 강구	
	▷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판명난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진료비 보상 청구(증빙자료 구비)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부과된 과태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됨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에 의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500만원 한도(부과금의 10%는 자기부담금으로 공제),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공제급여 제외) **▷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귀책사유 있는 식재료 납품 업체(위탁업체) 제재조치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 등)** - 학교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와 계약 시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해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이 해지됨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 - 계약보증금 징구 및 세입조치 •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식중독 발생) 책임을 물어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징구하고 세입 조치	환자이송팀 행·재정 지원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함(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44조②항)
	▷ 역학조사 결과 최종 보고 - 서면보고: 학교로 통보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부록 8 참조】 - 보고내용: 발생개요, 급식실시 현황, 주요 조치내용, 식중독 원인 조사결과,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시사	역학조사협력팀

구분	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체 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체)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체 보상	위탁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 부적정 등 취급 소홀, 조리실무사 및 시설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 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구분		수행 사항	비고
		점, 향후대책 등 ※ 역학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조정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는 시·군·구(보건소) 역학조사담당자가 작성 → 질병관리청 최종 평가 후 그 결과가 보건소에 통보되므로 1개월 이내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 ▷ **교육청 조치**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질병관리청 평가 결과, 자치단체 행정처분 등 결과 확인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 기준」에 의하여 처분 실시(부록 11 참조)	
<8단계>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유증상자 지속적 모니터링** •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유증상자 지속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 · 관찰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부록 10 참조】** - 교직원 및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식중독 예방 교육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훈련 실시를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 풍토 조성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훈련 실시를 통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는 종합훈련으로, ◦ 지진, 풍수해, 대형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훈련개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2(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주요내용: ① 훈련기간: 5일간 실시(예정) (매년 10월 말경에 실시되나 변경될 수 있음) ② 참여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③ 내용: 취약분야 등 재난대응 종합훈련 ④ 훈련방법: 토론훈련, 현장훈련으로 진행
훈련계획 수립	주요내용: ① 훈련계획 수립 시기: **매년 9월경** ▸교육청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훈련계획 수립 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체 계획 수립 ▸훈련 목표는 학생 스스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 능력 배양 ▸학생이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훈련에 주안을 두고 운영 ▸교육부 기본계획에 의하여 일선학교의 최소 훈련 참여 요건이 매해 정해짐**(모든 기관은 훈련기간 동안 최소 현장훈련 2회 이상 참여 요구)**
훈련실행 및 평가	주요내용: ① 훈련실행 ▸명확한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훈련실시 및 결과처리 - 학교 훈련 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정리하여 기록 ② 평가 ▸기록된 훈련 내용을 피드백하여 익년도 훈련계획 수립에 반영

12. 민방위 훈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민방위훈련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훈련개요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4조(민방위 훈련)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2(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① 민방위 훈련이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② 훈련주기: 매년 실시 (행정안전부 집행계획) ▸전국단위민방위훈련과 지역단위(시.군단위)로 구분 ▸**연 4회 실시, 세부일정은 매년 변동** ③ 행정안전부 집행계획에 따라 연초 훈련일정 확정
훈련계획 수립	주요내용	① 훈련계획 수립 시기: 훈련 일정 통보 이후 ▸교육**(지원)**청 훈련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훈련계획 수립 ② 계획 수립 ▸학생 안전에 주안을 두고 운영 ▸각 학교에서는 대피소 지정 등 대피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교육부 학교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지침에 따라 대피소 지정)**
훈련실행 및 평가	주요내용	① 훈련실행 ▸명확한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 재난대응 민방위 훈련: 화재, 지진대피 훈련 등 실시 - 민방공 훈련: 공습대피 훈련 등 실시 ▸훈련실시 및 결과처리 - 학교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정리하여 기록 ② 평가 ▸기록된 훈련 내용을 **분석 · 평가하여 다음 해 훈련계획 수립 시 반영**

13. 교육시설공제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복구, 신체손해배상 및 제3자 법률적 배상책임 대책 마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공제	관련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도서관 도서류 가입】 - 가입방식: 물품으로 가입 - 가입방법: 도서관리대장과 도서에 구입금액이 표기된 도서 전체를 1식으로 가입 - 추가가입: 100만원 이상으로 묶어서 가입 가능 - 예외: 고서, 문화재류, 가입금액이 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교육시설공제** 가입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납부	주요내용	① 목적: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각급학교 및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함 ② 대상 ▸건물: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물품: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교구·설비, 실험·실습장비 및 장치, 집기비품 ▸부속물: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옹벽, 석축, 배수로, 우천로, 관중석, 포장, 관람석(차양막), 급수대, 조회대, 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③ 보상책임기간: 1월1일 0시~12월31일 24시까지 1년간 (정기가입 기준) ④ 보상범위: 화재(벼락)·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 및 신체손해 ⑤ 공제 가입회비**(2025년 기준)** ▸건물: 일반건물(폐교포함) **150원**/㎡ 고가건물 가입금액*0.011% ▸물품: **가입금액***0.0248% ▸건물의 부속물: **가입금액***0.0248%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9원**/㎡
가입 절차	주요내용	① **정기가입: 매년 11월경** ② 건물현황 실사조사 및 내·외부 시설물 조사 ▸건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실사 후 연면적 기준으로 등재 철저 ▸물품: 누락된 물품대장 등재 철저 ▸건물의 부속물: 누락된 부속물(공작물) 재산대장 등재 철저 ③ 건물 가입 시 자동담보 되는 분야 ▸기본교구: 칠판, 게시판, 교탁, 학생 및 교직원 책걸상, 실험대, 사물함, 신발장, 청소도구함 등 ▸기본설비: 전기통신·기계·소방분야(천장형냉난방기 포함) 등 ▸기본부속물: 교문(정문 및 후문), 담장(학교 부지 경계용), 간판, 차양 등 ④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신청 ▸작성방법: 한국교육시설안전원(https://pot.koies.or.kr/ www.koies.or.kr)에 접속하여 가입내역 등록 ▸제출처: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 사립 유치원·학교는 자체 별도 가입
【건물 증축·개축·신축 시 공제가입】 - 완공 후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 사용승인 받은 면적 가입 - 준공검사완료 후 ⇨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가입 - 건축물관리대장 신청 중 ⇨ 신청 공문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후		
【안전원에 알려야 하는 경우】 - 공제대상물에 재난 발생 - 공제대상건물의 구조·용도 및 증·개축의 변동 발생 - 소유권 변동 - 공제대상물을 다른 보험(공제)에 중복 가입 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교육시설공제 보상대상으로 피해복구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안전원과 사전협의** 절차 후에 선복구 실시 가능	주요내용	① 공제급여 신청 대상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화재, 풍해, 수해, 한파 및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및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 ② 공제급여 지급 신청서 제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정보망에 사고 통보 후, 보상 가능할 경우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정보망으로 신청 ▸붙임 필수서류: 가입내역,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건물평면도, 건축물대장, 복구비 산출내역, 재난사진,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사고접수 방법 - 유·초·중·고·특수학교(공립, 사립 동일) → 공제정보망 사고 접수 ▸공제급여 신청 방법 - 유·초·중·고·특수학교 → 공제정보망에 필수 서류 첨부하여 공제급여 신청 후 승인요청 → 교육지원청 승인 ※ 사립학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정보망에 공제급여 신청 후 법인 승인 - [급여신청] 공제급여 신청 서식

제 5 편 시설안전

<table>
<tr><td>업 무 명</td><td colspan="2">시설안전</td></tr>
<tr><td>관련법규</td><td colspan="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d>업무개요</td><td colspan="2">학교시설물의 정기 · 수시 점검관리로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한 건축 · 전기 · 소방 · 가스 · 승강기 · 옹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련 업무</td></tr>
<tr><td rowspan="5">주요내용</td><td colspan="2">단 위 업 무</td></tr>
<tr><td>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건축분야)</td><td>5. 승강기 분야 안전</td></tr>
<tr><td>2. 전기 분야 안전</td><td>6. 옹벽 안전점검</td></tr>
<tr><td>3. 소방 분야 안전</td><td>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td></tr>
<tr><td>4. 가스 분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td><td>8. 안전점검의 날</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전기 분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소방 분야 : 한국소방안전원
○ 가스 분야 : 한국가스안전공사
○ 승강기 분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td></tr>
</table>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건축분야)

계절별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 주체: 학교 -	관련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참고자료】 - 재해취약시설 지정 대상시설 및 점검 세부기준 - 구조안전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절차	주요내용	① 교육시설물 일상점검(월 1회) ▸매월 '안전점검의 날' 일상점검 실시 ② 교육시설물 연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정기점검 실시 ③ 교육시설물 현황 조사 및 계절별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등급 산정 ④ 재해취약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⑤ 관리자 「자체점검」으로 결함정도 판단(주요점검표 참조) ⑥ 이상발견 시 출입금지 조치 등 긴급조치 실시 ⑦ 주요결함 또는 판단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요청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 주체: 교육지원청 -	주요내용	① 학교요청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파악 및 육안점검 ② 조치사항에 대한 판단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안전점검 - 주체: 학교, 교육지원청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① **전문기관 정밀점검 실시** ▸건물 안전등급 판정 ▸보수·보강 범위 및 방법과 소요예산 산정 ②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밀점검 결과 D,E 등급인 경우 실시 ▸건물 안전등급 판정 ▸보수·보강 범위 및 방법과 소요예산 산정 ③ 구조안전위험시설(D,E 등급) 판정 및 해소 절차 추진(교육지원청) ▸정밀안전진단 결과 D,E 등급인 경우 추진 ▸경기도교육청 구조안전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구조안전위험시설해소 중장기계획 수립 ▸표지판 설치 및 정기점검 **주1회** 실시 (학교-재해취약시설관리카드 활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관련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실시 대상의 수선이라 함은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	주요내용	①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대상시설(이하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 ②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실시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연면적 33㎡ 이상) 또는 수선(70㎡ 이상)하는 경우 ▸시기: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 ▸학교에서 직접 상기 대상의 공사(리모델링 등 포함)를 할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확인검사 실시 여부 확인 ③ 확인검사 부적합 시 활동공간 이용 중지 ④ 확인검사 면제 ▸소유자는 확인검사 면제대상여부를 사전확인하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면제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한 경우 면제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자재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증축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 면제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자재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년간 비치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이 ‘17.1.1일부터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합성고무바닥재, 바닥재로 사용된 토양)를 신축, 증축, 수선 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내역서 등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하여 환경표지제품 여부 확인

2. 전기 분야 안전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기안전관리자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주요내용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목적: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수행
- ▸선임자: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학교장)
- ▸선임대상
 - 전압 1,000V 초과 전기수용설비
 - 설비용량 20kW 초과 발전설비
- ▸선 · 해임신고기한
 - 선 ·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 신고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할 시 · 도회**

②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 ▸비상주근무

구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대상	-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5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5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3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 ▸상주근무 - 1,000kw이상의 전기수용설비

③ 계약필수 확인사항

- ▸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업체 적격여부 확인

(전기설비규모에 따라 대행업체 달라짐/규칙 별표13 참조)

전기시설 정기점검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시기

구분	대상시설	점검시기
자가용 전기설비	-600V이상의 수전설비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3년마다** 전후 2월 이내
일반용 전기설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년마다** 전후 2월 이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년마다** 전후 2월 이내

※ 자가용 - 1,000V 초과, 75kW 이상(대부분 학교)
일반용 - 1,000V 이하, 75kW 미만(소규모 학교)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② 점검신청

구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신청시기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서류	정기검사신청서(6호)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결과통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29호) 발급	
결과조치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부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	부적합시설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 참고자료 : 2023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③ 사전 준비사항

- ▸정기검사 시 정전이 수반되므로 전산 및 통신, 보안장비 및 승강기 등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및 교직원에게 정기검사 일자와 시간을 통보
- ▸정기검사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전기설비 책임분계점 개방을 통한 인입선 점검
- ▸점검 결과의 보존 기간: 3년

④ 잔류성유기오염물질(PCBs) 관리대상기기 신고

- ▸근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대상: 신규설치 유입식 변압기
- ▸신고내용: 별지 제8호서식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 절연유 교체여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2㎎이상)
- ▸신고기한: 설치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전기시설 일상점검

관련근거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

주요내용

① 전기설비용량에 따른 월 점검 횟수

구분	전기설비용량	점검횟수
저압	300kw 이하	월 1회
	300kw 초과	월 2회
고압	300kw 이하	월 1회
	300kw 초과 500kw이하	월 2회
	500kw 초과 700kw이하	월 3회
	700kw 초과 1,500kw이하	월 4회

②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계약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용량이 300kw(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500kw)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대행 불가능.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교육시설에 상주

③ 연간점검계획 및 점검표 보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에 따라 연간점검계획을 수립, 점검결과를 4년간 보관하며 정기검사 시 제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측정·시험항목		주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				○	○	별지1호
저압 전기설비점검								별지2호
- 절연저항측정				△	○			
- 누설전류측정			△	△				
- 접지저항측정				○				
고압 전기설비점검								별지3호
- 절연저항 측정					○			
- 접지저항 측정					○			
- 절연내력 측정					○			
변압기 점검								별지4호
- 절연저항					○			
- 절연내력, - 산가도 측정(절연유)					△			
계전기및차단기동작시험					○			별지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별지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발전기무부하또는부하시험		○					
적외선열화상측정			○					별지7호
전원품질분석					○			별지8호

※ ○ : 필수 △ : 필요시

시설별 점검사항

주요내용

① 전기실 수변전설비
- ▸전기실 및 고압기기 외함의 청소 상태
- ▸유입식 특고압기기의 누유 및 팽창여부
- ▸누전경보기 누전 검출 여부
- ▸배전반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② 기계실 동력반
- ▸제어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 ▸동력기기(펌프,팬)에서의 누전 발생 여부
- ▸콘덴서의 누유 및 팽창 여부
- ▸제어기기 및 동력기기의 부식, 노후 여부
- ▸집수정 배수펌프의 작동 상태 여부

③ 각 층 분전반
-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 ▸단자부 정상 접속 여부
-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 ▸선로별 누전 발생 여부
- ▸함 내에 물기 침입 또는 금속물질 방치 여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실별 점검사항	주요내용	① 교실 등 기타 관리실 ▸퇴실한 장소의 전기제품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 ▸전열제품의 전원코드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으로 접속되었는지 확인 ▸전선이 꼬이거나 묶여진 상태로 사용하는지 확인 ② 조리실, 화장실 등 ▸방수형콘센트 커버가 씌워져 있는 지 확인 ▸식기세척기 등 급식전기제품 외관 및 설치상태 확인 ▸배기후드, 환풍기는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③ 복도 ▸냉온수기, 음료자판기 외관 및 설치상태를 확인 ▸분전반함(EPS실)이 잠겨있는지 확인 ▸콘센트가 파손되거나 물기가 침입하였는지 확인
전기 사고 예방	주요내용	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②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③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철사 등을 집어넣지 않는다. ④ 위험 '고압' 등이 쓰인 장소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⑤ 고장 난 전기 기기를 직접 고치지 않는다. ⑥ 물에 젖은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는다. ⑦ 누전 차단기는 반드시 사용한다. ⑧ 자판기, 정수기, 펌프 등 전기기기의 금속부분은 접지를 한다. ⑨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⑨ 개인 전열기구(온열기, 전기방석 등)사용 하지 않는다 ⑩ 퇴실 시 전원스위치를 끈다.(※선풍기, 냉난방기 off)

3. 소방 분야 안전

화재예방을 위한 학교시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와 소방시설에 대한 법정점검, 일상점검, 자체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주요내용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목 적: 방화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선임대상: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자 격: **감독직**에 있으며 규정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선임할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 관리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법정점검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주요내용	① 종합점검 ▸의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1,000㎡이상**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30일까지) ▸점검서식: **규칙 별지 9호 서식** ▸점검자: 소방시설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필수참여** 및 별표2 충족) ▸점검결과: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② 작동점검 ▸의의: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점검대상: 전기관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점검서식: **규칙 별지 9호 서식**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경우 규칙 별표2 충족) ▸점검결과: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감독적직위에 있는 자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16조에 의하면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장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강습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일상점검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외관점검) ▸점검대상: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단,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가능)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2년간** 점검결과 자체 보관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비상구(출입구)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행위금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을 쌓거나 방호셔터구역 장애물 설치금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방화문 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금지**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방화구획, 방화문 임의변경, 무창층화 행위 등 금지**
주요 점검사항	점검사항	①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함이나 부근에 조작설명서 부착 확인 - 학교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식(**수동기동방식**, **자동기동방식**)에 맞는 사용설명서 부착 확인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 금지 ▸옥내소화전함 내 규정 수량의 호수와 노즐을 구비하고 물건 보관 금지 ▸전원은 항상 **ON상태**가 되도록 하고 표시 등이 점등된 상태 유지 ▸호스는 지그재그 상태로 꼬이지 않도록 잘 감아 보관 ▸호스는 항상 관창에 체결한 상태로 관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점검사항	② 소화기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위치표시 확인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축압식 소화기는 바늘이 **녹색**이면 정상, **노랑**은 재충전필요, **빨강**은 과충전으로 바늘 눈금 확인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확인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분말소화기**는 교체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서 의무교체로 규정 ▸가압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수거 후 폐기 ③ 수신반 ▸수신기 조작부 스위치 정상위치 확인 ▸화재수신기가 있는 장소에 경계구역 일람표 비치 확인 ▸수신반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시 이상 유무 확인 ④ 기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 변형, 탈락 확인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확인 ▸피난기구 사용방법 표시 확인
이상 작동 시 조치사항	조치사항	① 각실 화재감지기가 오동작했을 경우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수신반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작된 감지기를 분리한다. ② 화재수신반 주경종 및 각층 지구경종이 동작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경종버튼을 원상복구한다. ③ 소화펌프 동작 및 화재수신반 펌프의 기동확인 램프가 점등했을 경우 ▸수신반에서 펌프를 정지한 후 펌프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수신반에 펌프 정지버튼이 없는 경우 펌프의 전원을 차단한다. ④ 각 층의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폐쇄되었을 경우 ▸수신반에 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호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폐쇄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복구한다. ⑤ 피난구유도등이 점등되었을 경우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화재신호가 복구되면 유도등은 자동으로 소등한다. ⑥ 스프링클러설비 사이렌이 동작하거나 헤드에서 물이 나올 경우 ▸수신반에서 사이렌 정지스위치를 눌러서 정지시킨다. ▸물이 나오는 층으로 이동하여 알람밸브실을 찾아 밸브를 잠근다. ▸소방전문업체에 연락한다.

4. 가스 분야(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

학교 가스시설(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명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도시가스)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특정가스사용시설(시행규칙 제20조의 2 및 별표1) - 안전관리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별표1)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시행규칙 제64조) - 안전교육(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4) - 정기검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주요내용	① 대상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제1종 보호시설에서 월 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로 학교 및 유치원은 제1종 보호시설 ② 저장능력별 관리 내용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000㎥ 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아님
3,000 ~ 4,000㎥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4,000㎥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 겸임 가능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③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퇴직 등의 경우 지체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퇴직의 경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④ 안전교육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양성교육(1회)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⑤ 정기검사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정압기는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그 이후는 4년에 1회 이상 정압기 및 필터 분해점검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액화석유가스)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특정사용자(시행규칙 제70조 및 별표1) - 안전관리자(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 별표1)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제2호) - 안전교육(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별표19) - 정기검사(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주요내용	① 대상시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자로 학교 및 유치원은 제1종 보호시설 ② 저장능력별 관리 내용

저장능력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50kg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경우에 따라 가입
250kg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조건
- 저장능력이 500kg(자동절체기 사용 250kg)이상
- 저장능력이 500kg(자동절체기 사용 250kg) 미만 중 급식소 상시 1회 수용인원이 50인 이상

▸안전관리총괄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 겸임 가능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③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 · 용기 · 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퇴직 등의 경우 지체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퇴직의 경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④ 안전교육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양성교육(1회)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⑤ 정기검사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5. 승강기 분야 안전

승강기시설의 법적 의무사항 명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승강기)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설치신고(법 제27조, 시행규칙 제46조) - 자체점검(법 제31조) - 각종검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53조) - 운행정지(법 제50조) - 안전관리자(법 제29조,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관리교육(시행규칙 제52조) - 사고 및 고장보고(법 제48조, 시행령 제37조) ※ 승강기 종류 시행규칙 제2조 참조
	주요내용	① 대상시설: 모든 승강기 시설 ②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설치공사업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고 ③ 자체점검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위탁점검의 경우, 유지관리업자가 입력 ▸관리주체 스스로 자체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④ 각종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 ▸정기검사 - 주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이내이며, 최초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수시검사: 승강기의 기능 등을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정밀안전검사 - 완성 및 정기, 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 중대한 사고(사망 등)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받아야 하며,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⑤ 운행정지: 각종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운행정지 명령 ⑥ 안전관리자 ▸승강기 운행에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교육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이수해야하며, 주기는 3년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유지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⑦ 사고 및 고장보고 ▸관리주체는 중대사고나 중대고장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됨 - 중대사고: 사망자 발생,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중대고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참조

6. 옹벽 안전점검

옹벽 시설물에 대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table>
<tr><th>세부업무명</th><th>관련근거 및 주요내용</th></tr>
<tr><td>옹벽 자체 안전점검</td><td>
관련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주요내용

① 옹벽시설물 현황 조사 및 안전등급 산정

▸대상
<table>
<tr><th>구분</th><th>시설물</th><th>비고</th></tr>
<tr><td>2종 시설물 옹벽</td><td>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연장 100m 이상 옹벽</td><td></td></tr>
<tr><td>3종 시설물 옹벽</td><td>높이5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장 100m 이상인 옹벽</td><td></td></tr>
<tr><td>급경사지</td><td>높이 5m, 경사도 34도, 연장 20m 이상 옹벽 및 축대</td><td>2종 제외</td></tr>
<tr><td>등급 미지정 시설물 옹벽</td><td>높이 5m, 연장 20m 미만 축대.옹벽.석축</td><td></td></tr>
</table>
▸시기: 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2월~4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12월)

② 관리자 「자체점검」으로 결함정도 판단

③ 이상발견 시 출입금지 조치 등 긴급조치 실시

④ 주요결함 또는 판단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요청
</td></tr>
<tr><td>교육지원청 확인점검</td><td>
주요내용

①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파악 및 육안점검

② 조치사항에 대한 판단 및 기술지원
</td></tr>
<tr><td>제2종 · 제3종 시설물(옹벽) 전문기관 안전점검</td><td>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주요내용

① 전문기관 정기점검 실시(반기에 1회)

▸육안점검하여 옹벽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실시

② 전문기관 정밀점검 실시(안전등급에 따라 2~3년에 1회)

▸옹벽 안전등급 판정

▸보수 · 보강 범위 및 방법과 소요예산 산정
</td></tr>
</table>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주요내용	①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②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이동되지 않도록 고정된 것)가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안전관리(검사)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주요내용	① 설치검사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설치(정기시설)검사 신청서> ②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점검주기: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설치(정기시설)검사 신청서> ③ 안전진단 ▸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부터 1개월 이내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안전진단 신청서> ▸안전진단 실시대장 3년간 보관 ④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의 표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부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점검)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0조
	주요내용	① 안전점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놀이기구별로 월 1회 이상 점검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참조) ▸안전점검 실시대장 3년간 보관 ② 안전교육(2년에 1회 이상)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시점: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담당자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교육주기/시간: 2년에 1회/4시간 이상 ▸안전관리지원기관에 신청
안전관리(보고)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6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4조
	주요내용	① 이용금지, 폐쇄, 철거 현황 보고 ▸이용금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놀이시설 폐쇄 및 철거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 보고 <참고: 중대사고 보고서식> ② 시설개선계획서 ▸다음과 같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③ 안전관리자 및 보험 변경 현황 보고 ▸안전관리자 및 **보험가입** 현황 변경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참고자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 등록 매뉴얼

【중대사고 범위】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이상
- 내장의 손상

8.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안전·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점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건 조성

안전점검의 날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전점검의 날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참고자료】 - 학교안전점검의날 체크리스트 - 나·침·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 안전교육 콘텐츠 공유·활용 (학교안전자원시스템, 국민안전교육포털 등 활용)	주요내용	① 시행일: 매월 4일(자체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② 추진 내용 -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다양한 행사 추진(캠페인, 재난 안전 교육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 해빙기·여름철·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 재난대피훈련** **- 소방, 전기, 가스, 방역, 승강기 등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전문가의 점검 등**